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10 연간보고서

희망을 그리는 길, 공감

글 싣는 순서

4_
프롤로그

6_
공감 소개

7_
2010 공감 10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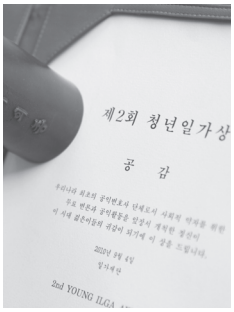

11_
2010 공감의 활동
12 여성인권
16 장애인권
20 이주 · 난민
24 빈곤 · 복지
28 국제인권
32 취약계층 노동
36 성소수자
40 공익법 일반
43 공익법 교육 · 중개

50_
2010 한 눈에 보는 공감

66_
공감이 걸어온 길

70_
2010 공감 살림살이

72_
2010 기부자 인터뷰
74 2010 기부자와 공감의 알콩달콩 이야기
76 후원안내
77 공감과 함께하신 분들

78_
에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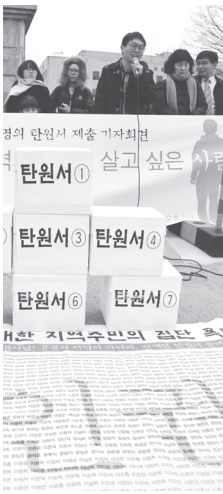

공감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혹독한 추위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니

봄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곧 새싹들의 계절 봄이 우리를 찾아오겠지요.

맹추위를 견디어낸 여러분들께 김춘수 시인의 '꽃' 이라는 시를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 모두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어합니다. 복지시설에서 24시간 생활하면서 7년간 한번도 바깥세상을 나가보지 못한 장애인들도, 어느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12시간씩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시는 학교 청소부 아주머니들도, 한겨울에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는 노숙자들도 잊혀지는 존재로 남고 싶진 않겠지요.

소수자 ·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침묵하고 방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 장애인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정리해고가 일상화된 요즘 누구나 거리에 나앉을 수 있고, 가족 중의 1인 이상은 비정규직입니다.

내 자녀가 성소수자일 수 있고, 외국에 나가면 우린 모두가 유색인종입니다.

결국 소수자 ·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만 7년 동안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에 함께 해주신 기부자님들과 활동가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길 고대합니다.

공감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어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은

비영리로 운영되며,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공감의 지향

1. 소수자 인권보장 및 인권의 경계 확장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2. 변화를 지향하는 법적 실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변화가 모색되는 다양한 지점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가능한 실천들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3.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

법을 인권보장과 사회변화를 위한 열린도구로 기능하게 하는 실천을 '공익법활동'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공익법활동'으로 공감대를 만들고 널리 퍼져,
'법'을 인권 보장과 사회 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서 기능하게 하는 다양한 흐름이
효과적으로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이 함께합니다.

2010 공감 10장면

1 허위통신 처벌조항 위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 결정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감은 위 규정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8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했고,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이주노동자에게도 인간다운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및 공개변론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직장을 3회까지 변경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감과 이주노동단체들은 직장변경 횟수 제한제도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되지 않은 것처럼, 헌법 또한 국민국가의 헌법을 넘어 시민헌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감은 헌법재판소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난민법 제정은 난민 인권보장의 큰 틀입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민법안 공청회

2010년 11월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공청회에서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전문가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공감은 2008년에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기독법률가회 등과 함께 난민NGO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난민의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난민법 제정안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09년 5월 국회의원 24명(대표발의 황우여 의원)에의해 발의되었는데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권리, 난민신청절차에서의 절차적 보장 등 포괄적인 난민인권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학생인권이 숨쉬는 교육현장 만들기의 첫 걸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 참여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교육 방식으로 인하여 학생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은 철저히 배제되고 의견을 표출할 기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숨쉬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 발의 형태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감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 참여하여 조례안을 만들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5 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와 재판,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해결 프로젝트 연속 워크샵과 토론회

공감은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 서울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소와 함께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해결 프로젝트' 연속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판결 분석과 상담소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던 연속 워크샵의 결과물은 2010년 10월 21일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에서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6 '공감'을 넘어선 또 다른 공감을 상상해보았습니다
– 미국 서부 지역 공익법 단체 탐방

2010년 1월 말~2월 초, 공감구성원 4인은 미국 서부 지역의 공익법 단체를 탐방하였습니다. 참가 구성원들의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및 그 인근의 공익법 단체를 선정하여 각 단체의 활동 경험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공감 활동의 확장과 다각화를 위해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다녀온 이들의 이야기는 4회에 걸쳐 공감 홈페이지에 소개되었습니다.

2010공감10장면

7 두근두근! 공감과 예비 법률가들의 세 번째 만남의 장이 열렸습니다
– 제3회 공감 인권법 캠프

2010년 2월로 세 번째 맞이하는 공감 인권법 캠프는 공감도, 참가자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행사입니다.
공익과 인권에 대한 관심의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 보이는 이들. 함께한 2박3일의 시간과 공간이 '공익'과 '인권'을 고민하는 예비 법률가들의 꿈을 끊임없이 응원할 것입니다.

8 로스쿨생의 공감 실무수습은 앞으로도 주욱 계속됩니다

– 로스쿨과의 실무수습 협약

공감은 공익활동의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성균관대, 원광대 로스쿨과 실무수습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감으로 실무수습을 신청한 로스쿨생들은 방학 2주 동안 공감에서 준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공감의 활동을 경험하면서 얻게 된 생각과 고민들이 앞으로 다른 이들의 인권을 대변하고자 하는 이들의 행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 공감이 공중파를 타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 KBS 〈시사기획 10〉 '낮은 세상과 공감하다' 방영

2010년 12월 28일, KBS 〈시사기획10〉 프로그램에 '낮은 세상과 공감하다'라는 주제로 공감의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3개월여의 취재내용을 잘 다듬어 만들어진 50여 분의 영상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취재기간 동안 공감 구성원들의 활동을 담기 위해 애쓰신 분들, 그 모습을 보시고 공감에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기부자가 되어 힘을 더해주시는 많은 분들… 공감은 고마워할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10 응원과 격려, 고맙습니다!

– 청년일가상 수상 등

공감에 경사가 났습니다. 2010년 9월에는 일가재단에서 '청년 일가상'을, 12월에는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에서 감사패를 받았거든요. 상을 받을수록 공감은 조금씩 낮아짐을 배우게 됩니다. 조금씩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조금 더 힘내라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과 격려의 마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상 소식이 전해졌던 그 순간만큼은 구성원 모두 아이들처럼 기뻐했다는 후문입니다.

공감의 활동

1. 여성인권
2. 장애인권
3. 이주·난민
4. 빈곤·복지
5. 국제인권
6. 취약계층 노동
7. 성소수자
8. 공익법 일반
9. 공익법 교육·중개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내 ·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법률자문 · 소송지원 · 법률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보호 · 복지증진 · 사회참여를 위한 법 · 제도 개선활동 및 연구조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안전한 이주 보장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외침

≫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공동 주최

2010년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는 인신매매 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하였지만, 여러 시민단체들은 이를 보완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인신매매법안은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와 이와 관련된 광고 · 모집행위 등을 처벌하고, 체류자격이나 취업자격 보장, 의료지원, 수사과정에서의 절차보장 등 피해자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의 인신매매법률들은 법조문이 구체적이지 못해 범죄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인신매매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1년 법안의 발의까지 관련 단체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회의를 거듭하며 법안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6일간의 집중훈련

≫ Training on the optional protocol to CEDAW for lawyers 2010. 2. 22~27

Training on the optional protocol to CEDAW for lawyers는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ction Watch Asia Pacific(IWRAW)이라는 국제NGO에서 주최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의 여성인권 변호사들에게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를 잘 활용하도록 교육시켜 각 국의 여성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등에서 온 13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강의와 토론, 조별발표, 모의재판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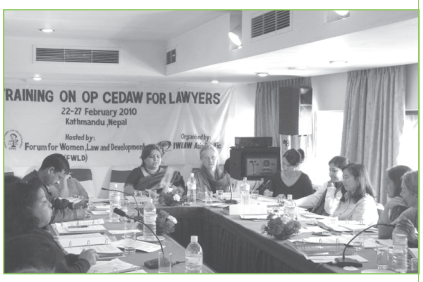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안내서 발간

≫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공동 제작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는 2010년 초, '두레방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이 공감에 인신매매 사례의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매뉴얼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다시함께센터'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이 집필에 참여하였고, 수차례의 기획회의를 통해 인신매매에 관한 기존 자료와 현행 법률, 실제 인신매매 상담사례를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책자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 현장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이 확산되기를, 또한 한국사회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반드시 처벌되고 피해자는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 대리모 사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_ 소라미 변호사

20년차 한국인 부부가 불임을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1달 만에 한국인 남성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소개로 베트남에서 18살 베트남 여성을 만나 혼인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베트남 여성은 두 딸을 출산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태어나자마자 전 부인에게 보내져 양육되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친모인 베트남 여성에게 몸이 회복될 때까지 시골에 있는 누나가 아이를 봐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 출산 두 · 세달 전부터 한국인 남성은 냉담하게 태도가 돌변해 전 부인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무일푼 신세가 되고 만다며 베트남 여성에게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베트남 여성은 협의 이혼을 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인 남성은 베트남 여성에게 2만 달러를 건넸습니다. 이혼한 지 한달도 안돼 한국인 부부는 재혼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두 딸을 자신들의 친딸인 것처럼 키워왔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한국에 돌아왔으나 연락처와 주소가 모두 바뀌어버려 한국인 남성도, 아이들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느 '막장'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현대판 씨받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던, 공감에서 지난 4년 간 진행해온 소송 이야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자 한국인 남성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산지 3일정도 되었을 때 한-베 사전을 활용하여 아이를 낳아주고 이혼하면 돈을 주겠다고 본인이 직접 베트남 여성에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은 그런 제안을 들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두 아이들 앞으로 각각 월 백여만짜리 보험을 들어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한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지요. 법정 밖에서 이 소송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하며 울었을 땐 안타까운 심정이 잠시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 돌변해 "변호사가 사실을 왜곡 · 날조하고 있다, 승소금 절반을 변호사가 챙기기로 했다" 라며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해댈 때면 당황스럽고 황당해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해지기 일쑤였습니다. 갓 변호사 일을 시작해서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중국 동포 여성의 가사소송을 대리했을 때입니다. 법정 밖에서 만난 공격적인 한국인 남성에게 맞서 대응했다가 결국 언성을 높여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했

▷ 이 글은 2010년 9월 공감뉴스레터에 개제되었습니다.

었지요.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예의 없는 상대방에게 단련될 수 있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득이라면 득일까요.

무엇보다 소름끼치게 무서웠던 것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한국인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의 모습은 한국사회의 천박한 자본주의 모습의 단면이겠지요. 문제는 과연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미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도 여성들의 대리모 이야기로 전세계 언론이 들끓은 바 있습니다. 인도의 젊은 미혼 여성들이 미국이나 영국의 불임 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자궁을 빌려준 대가로 인도 노동자의 10년치 월급을 받는다는 보도였습니다. 대리모 여성은 임신하는 동안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위해 식생활과 운동 등을 관리 받고, 아이는 출생하자마자 대리모를 의뢰한 부모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인도의 대리모 이야기와 한국의 현대판 씨받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돈 많은 나라 사람들이 돈 없는 나라 여성들의 재생산능력을 돈으로 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반인륜적 행태에 대한 해당 정부의 규제가 전무하다는 것이지요.

기나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당사자인 베트남 여성은 많이 힘겨워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소극적이었던 그녀는 몇 년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사조사관실에서 아이 얼굴 한번 본 거 외에는 아이들을 만날 수 없어, 더욱 어둡고 그늘져 갔습니다. 2009년 6월경 대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확정 받은 후 비로소 베트남 여성은 매달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 얼굴에서 종종 환한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행복해 하는 그녀 모습에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드디어 올해 7월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피해를 배상하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조금이나마 위자료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는 그녀에게 행복한 일들만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았습니다.

2. 장애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자문과 소송지원 및 법률교육,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한 법 · 제도 개선활동 및 인권교육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차별없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를 막아줄 권리 옹호체계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10년 8월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그리고 탈시설정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우리 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대안 찾기"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정책토론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 제도인 P&A(Protection & Advocacy)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리옹호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첫 소송 승소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공감이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탈시설정책위원회는 2003년부터 시설의 인권침해, 비리척결 및 민주화운동, 비인간적인 시설 수용 중심의 사회복지 시설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6일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ㄱ씨와 ㄴ씨는 대규모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관할 관청에서는 ㄱ씨와 ㄴ씨의 신청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이들의 신청을 거부해 왔습니다. 본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ㄱ씨와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소송은 시설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위한 첫 번째 소송인 동시에 그동안 잠자고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에 근거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정신장애를 둔 가족은 이웃이 될 수 없나요?

≫ 정신장애가족에 대한 지역주민의 강제전출 강요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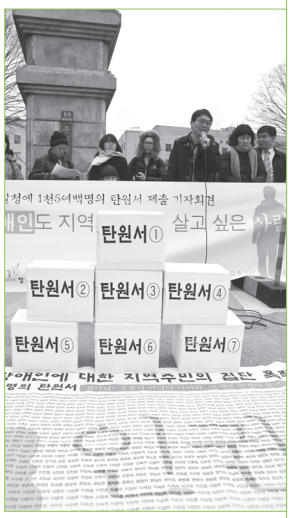

경기도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신장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웃의 강요로 '아들을 다시는 집에 들이지 않겠다, 위반 시에는 이사 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아파트 이웃 사이에 발생한 폭행사건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정작 피해자 가족과는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했으나, 아파트 이웃들은 공공기관에 탄원서 제출, 집 앞 집단 시위 등으로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노인정에 모인 수십 명의 이웃들에게 둘러싸인 채 아버지는 각서를 작성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감은 이 사건을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장애차별 사건으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다중위력에 의한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형사고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 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0일, 강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결정을 받아 형사재판을 진행중 입니다.

지적장애를 고려한 수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글_ 염형국 변호사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17세의 나이에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역 인근 한 건물 계단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절도범으로 수사를 받던 다른 노숙인을 추궁해 그 여자가 아이를 버렸다는 허위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 여자로부터 허위자백을 손쉽게 받아내었고, 바로 구속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5일 후 숨진 영아와 그 여자의 유전자가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17세의 그녀가 가족의 보살핌도, 정부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역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부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버림받은 그녀를 일방적으로 범죄인으로 몰아가고, 구속시키는 수사기관의 몰염치한 수사관행은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공감에서는 그녀와 그녀의 법정대리인 친모를 대리하여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대하여 2009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0년 9월 1심 법원은 장애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긴급체포할 당시 작성된 (경찰서 유치장)입감지휘서에는 그녀의 상태에 관해 "17세, 정신지체장애 2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그녀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호자도 없이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그녀로부터 범행 일체에 관해 허위로 자백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경찰이 그녀의 지적장애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동석없이

자백조서를 받고 15일간이나 구속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형사소송법,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보호자 등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장애인인 피의자가 보호자 등의 조력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수사기관으로서도 장애인에 대한 조사 전에 장애의 유무나 장애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진술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상 보호자 등 신뢰관계자의 동석제도나 국선변호인제도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그 형식적 적용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그 여자는 성격이 소심합니다. 경찰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여자는 경찰서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시키는 그대로 진술을 합니다. 그런 허위자백으로 15일이나 억울하게 구속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건 무리이겠지요. 현재로서는 다시 또 노숙을 하거나 복지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다시는 억울하게 경찰에 붙잡혀 구속이 되는 일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녀와 같은 지적장애인들이 수사절차에 있어서만큼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이주·난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출입국과 관련하여 단속 · 보호 · 강제퇴거 절차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난민신청자들이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 난민 인정 받다

≫ 버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항소심 승소

2010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버마행동 소속 8인의 버마민주화 활동가들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에 대하여 앞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버마에 돌아가게 되면 한국에서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난민으로 인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결론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한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5-6년간 매년 수십 차례 집회 · 시위를 하여야만 그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인정할 수 있다는 매우 엄격한 판단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수년간에 걸친 꾸준한 버마민주화 활동을 "단순 가담", "소극적인 방법", "활동수준도 미미", "소극적인 활동"으로 폄하한 바 있습니다. 2011년 2월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 동아시아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회의 발표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2010년 4월 28일 일본난민협회, 피난처, 연세대법학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동아시아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회의에서 "새로운 난민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공감은 2009년 6월 13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난민보호와 시민사회 국제심포지엄에도 초청되어 "한국, 일본, 홍콩에 있어서의 난민보호의 발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명자, 아끼꼬, 쏘냐

글_ 정정훈 변호사

2010년 5월 24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사할린에 다녀왔습니다.
사할린은 섬입니다. 사할린은 러시아 연해주 동쪽, 일본 북해도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땅입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잃은 조선의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 정착한 땅이며, 1938년의 '국가총동원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된 조선의 한인들이 벌목장,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한 땅이기도 합니다.

1992년 김지미 주연의 영화 〈명자, 아끼꼬, 쏘냐〉는, 그 제목만으로도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의 역사는 세 개의 이름, 세 개의 국적을 강요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945년 패전국 일본은 사할린에 억류된 일본인의 귀환에 매우 빠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일본 국적이었던 조선인들의 한국 귀환은 철저히 통제된 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패망 후, 한국으로 가는 배가 올 것이라는 소식에 수만명의 한인들이 코르사코프 항구에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희망은 끝내 이루어지 않습니다. 당시 소련은 전후처리에 의하여 남사할린의 영토귀속이 변경되었을 때, 국제관행인 영토변경에 의한 국적선택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소련 국적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거주 한인들을 일괄적으로 무국적자로 처리합니다. 1950년대 이후 소련은 사할린 한인에게 북한국적을 취득할 것을 권장하고, 동시에 소련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당시 사할린 한인의 귀환을 거부했던 일본 정부의 논리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할린 한인들이 모두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된 것은 아니므로 자유 모집에 응하여 자의로 이주한 사

▷ 이 글은 2010년 6월 공감뉴스레터에 개제되었습니다.

람과 강제동원된 사람을 구별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강제동원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귀환의 법적 의무까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1946년 집단 송환시 일본은 연합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집단송환은 미 · 소간의 협정으로 실시된 것이며, 귀환 승선자의 선별은 소련 당국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일본 정부가 한인의 귀환 기회를 봉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할린 한인의 억류는 전후 처리 과정에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배경으로 하는 국제관계와 일제의 조선인 기민(棄民)정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명자, 아끼꼬, 쏘냐〉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러시아 인형, 마트로시카를 닮아 있습니다. 인형 속에 작은 인형이, 그 작은 인형 속에 더 작은 인형이 들어있는 러시아 목각 인형 마트로시카는 웃는 듯 우는 듯 표정을 읽기 어렵습니다. "운명의 선물 마트로시카, 열고 또 열어도 나오는 건 슬픔뿐"이라는 노래는 겹겹의 무표정으로 역사를 견뎌내야 했던 민중들을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쏘냐' 라는 이름으로 사할린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아끼꼬' 가 '명자' 가 있습니다. 그 겹의 정체성은 역사가 강요한 상처였고, 아직 어느 역사, 어느 국가도 그 상처와 슬픔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그 역사의 문제가 여전히 오늘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문제를 현재화하는 방식을 고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뜻을 모아 소송 등의 방식으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민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제기가 '핏줄' 에 방점을 찍는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의 문제제기가 목각 인형의 허리를 비틀어 과거의 정체성을 끄집어내고 강요하는 방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과 같은 방식은, 오늘 또 다시 삶의 선택을 강요하며, 과거 역사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과 구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역사의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러시아에서 보고 느꼈던 것은 '민족' 이 아니라, '국가라는 제도에 의해 버려진 삶' 이었고, '역사가 비틀어버린 사람' 이었습니다. 사람과 삶에 충실한 제도를 통해 과거의 상처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여전히 오늘의 과제입니다.

홈리스, 도시빈민 등 빈곤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법 · 제도 개선연구를 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단체에
법률지원, 법률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에 관한 상담, 실태조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구역 세입자 권리보장, 대법원 앞에서 좌초하다

≫ 재개발 / 뉴타운 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소송

공감은 2009년에 이어 주택 재개발, 뉴타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집단소송 사업에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를 재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인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감공고일 전 3개월부터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세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전 3개월부터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세입자로 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세입자들은 관계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따라 후자의 기준일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고, 제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7개 구역의 소송이 각급 법원에 계속되던 중, 세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선고됨에 따라, 세입자들은 패소 후 소송비용 부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 취하로 소송을 종결하여야만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일부 세입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여 개발구역 세입자들의 구체적 권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양받지도 못하고, 기초생활 보장도 받지 못하고

≫ 생계급여변경처분 취소소송

공감은 2009년부터 2010년, 참여연대와 함께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간주부양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실제소득'에 포함하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다투는 기획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 유무 및 수급 액수는 '실제소득'에 따라 좌우되는데,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지도 않은 간주부양비가 '실제소득'에 포함됨으로써 수급권자의 범위와 수급액수가 크게 왜곡되어 온 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하였는데, 이는 해당 재판부에서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겠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본취지보다는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 우선의 원칙에 더 무게를 두고, 사회보장적 급여에 대하여는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에도 보다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 결과로 보입니다.

강제퇴거금지,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강제퇴거금지법」제정을 위한 활동

우리 사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경기 부양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정작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뒷전이었습니다. 2009년 1월 20일의 용산참사는 철거 후 개발될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고 '동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감은 인권단체들과 함께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법률안은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법제화하고, 거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로의 전환, 퇴거의 적법요건 확립 및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폭력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습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활동은 2011년에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능력 평가기준

글_ 차혜령 변호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흔히 조건부 수급자라고 부른다. 한편, 의료급여법상 1종 수급권자보다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2종 수급권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 수급자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누구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중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등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 12월 31일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된 근거이다. 종전에는 몇 개월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활용하였으나, 이것만으로 근로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니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준을 만들자는 목적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새로 만들어진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상 2종 수급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조건부 수급자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되지 않으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주요한 것 중 하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근로능력 평가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아야 하고,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기 위하여는 의학평가는 1~4단계 중 높은 단계로, 활동능력평가는 0~40점 중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체력, 만성적 증상, 알콜중독, 취업가능성, 자기관리, 집중력, 근로의욕, 자기통제, 대처능력, 표현능력의 10가지 항목이다. 그런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체력, 만성적 증상, 알콜중독은 의사가 평가할 항목이며 나머지 항목들은 활

▷ 이 글은 2010년 4월 공감뉴스레터에 개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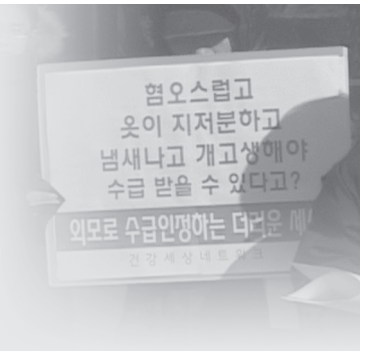

동능력 평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하여, 평가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3월 4일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고시하였지만 '외모관리' 를 '자기관리' 항목으로, '자신감' 을 '근로의욕' 으로, '동시업무 수행능력' 을 '표현능력' 으로 바꾸고, '외모가 혐오감을 주거나 심한 냄새가 난다' , '작심삼일이다' 와 같이 문제되었던 표현만을 수정하였을 뿐 활동능력 평가 10개 항목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활동능력 평가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심사 공무원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나는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낮으며 근로의욕이 없으며 자기통제를 하지 못하고, 대처능력이 낮으며, 표현능력이 없다.' 라는 사실을 공무원이 행하는 상황평가-관찰평가-면접평가의 과정 중에 최선을 다해 드러내어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활동능력 평가기준이 적용된 근로능력평가과정 자체가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에게 줄 굴욕감과 모욕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평가가 기분 나쁘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활동능력 평가 자체가 신청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그렇지 않은 수급자를 나누는 방식이 과연 기초생활보장제도 구성에 필수적인가, 어떠한 개인이 일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조건의 문제이지 근로능력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차치하고서,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만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히려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수급자를 선정하도록 만들었다면, 그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5. 국제인권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된 국제인권법 및 외국법 연구조사, 유엔인권시스템의 활용, 국제적인 공익변호사 네트워크의 강화 및 공동활동, 국제적 인권문제에 대한 직 · 간접적인 개입 등의 활동을 합니다. 특히 실천적인 연구조사와 관련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활동하고 국내 · 외적 인권상황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인권기구 네트워크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공식방문 관련 활동

공감은 2009년 10월,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과 함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Frank LaRue)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국내 의사표현의 자유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후 한국 정부에 공식방문을 통해 국내 표현의 자유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공감은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과 함께 2010년 6월 그의 공식방문기간 동안 피해자 면담,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근래 악화된 국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 집회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한 정식보고서는 2011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3개국 법률가들의 그물망 짜기

≫ 도요타재단 후원 한국–필리핀–일본 이주과정 프로젝트 진행

공감은 도요타재단의 후원을 받아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한국–필리핀–일본의 각국의 인권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과 연계하여 각국의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 및 그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감은 2010년 3월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필리핀 이주변호사 간담회를 주재하였고, 9월 19일 마닐라에서 필리핀 공익법센터와 함께 한–필 이주변호사 워크샵을 공동주최함과 동시에 위 워크샵에서 "한국의 이주민 관련 법적 쟁점과 국제적 법률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10월 2일에는 일본변호사협회가 일본 동경에서 주최한 일한 외국인법제연구회에 참가하여 "이주민과 한국 법제", "산업연수생 제도와 그 대안: 고용허가제와의 비교", "한국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법제 지원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공감, 아시아 난민 인권 보호의 중심에 서다

≫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 네트워크 회의 참석 및 의장 취임

공감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27일의 3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 네트워크(APRRN)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위 회의에서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NGO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위 네트워크의 차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08년 11월에 결성된 이 네트워크는 20여개 국가의 50여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아태지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난민 관련 NGO들의 네트워크입니다. APRRN는 그동안 주요 이슈에 관한 성명서 발표, 국제워크샵 개최, 국제기구회의 개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탈북자는 난민인가

탈북자의 문제를 난민의 관점, 탈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

글_ 황필규 변호사

얼마 전 영국의 변호사들로부터 영국에서 탈북자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요청하는 몇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요청 내용의 요지는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에는 비록 박해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남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영국 당국의 주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것이었다.

난민협약 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제3조), 「국적법」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대법원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한 자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확인하고 있다(96누1221).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탈북자지원법」')은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난민의 개념에 바로 형식적으로 대입시키면 모든 탈북자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난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이 글은 2010년 1월 공감뉴스레터에 개제되었습니다.

문제는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탈북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남한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남한의 입장 혹은 남한의 국내법을 우선시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탈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할 것인가. 난민협약의 취지에 입각했을 때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해봤는데 북한 인권을 다루는 분들은 탈북자의 난민 지위에 관하여 의외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주로 공격대상으로서의 가해자 중심의 논의는 아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난민협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적국의 보호' 에서의 '국적' 은 자동적이고 온전한 '국적'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탈북자지원법」은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 한 자에 한정하고 있고 그 기본원칙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탈북자지원법」상 보호신청 및 결정 등의 절차가 법리적으로는 탈북자들의 남한 국적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재외동포나 재외국민 관련 법령이 탈북자에게는 바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만 보아도, 보호와 관련된 절차는 사실상 탈북자들의 남한 국적 확인에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탈북자의 남한국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중국적이 아니라 북한의 국가성의 부인 및 북한정권의 반국가단체성의 승인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그리고 북한국적 보유의 입증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조건부 국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탈북자에게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90일 이내(평균적으로는 30일,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의 합동신문이라는 사실상의 구금상태, 12주 이내의 하나원 교육이라는 사실상의 준구금상태를 견뎌내야만 하는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된다. 심지어는 국방부훈령인 「군 합동신문소 운영 훈령」(제1084호, 2009. 7. 30.)은 '각급 기관의 장' 이 언제라도 탈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들 탈북자들을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왜 다수의 탈북자들은 남한에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 일부 외국의 난민신청사건에서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북한공작원들에 의해 피해를 당할 가능성', '북한에서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남한사회에서의 차별대우의 가능성' 을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이들의 생각 전부를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흥분하기 이전에 탈북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무엇이 진정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북한 인권' 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출발점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법 · 제도 개선활동, 소송 및 자문, 연구조사, 교육 등을 통해 소외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주노동자, 청소년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검침원 아주머니들의 퇴직금을 떼먹지 마세요

≫ 도시가스 검침원의 퇴직금 청구소송 승소

공감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도시가스검침원 다섯 명을 대리하여 퇴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2011년 1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이들에게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들이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퇴직금은 노동자들이 실업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마련할 수 있는 목돈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보다도 강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 특히 법에 무지하거나 사용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힘없는 노동자들은 실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을 통해 이러한 퇴직금 지급 면탈 관행을 깨뜨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경조금 지급이 차별되어서는 안됩니다

≫ 하나은행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진정

공감은 2010년 10월 하나은행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노조비정규직위원장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계약갱신의 거절, 즉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든 면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열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번 진정은 그 중 한 예인 경조금 지급에서의 차별에 대한 시정 권고를 구하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2011년 2월, 국가위원회는 이 진정에 대하여 해당은행이 경조사 수당에 있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차등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 요양보호사보호법안 마련 및 토론회 참가

요양보호사는 대표적인 돌봄 노동자로서 나이든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약 60만 명의 여성이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으나 이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질환 등 각종 질병 및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감은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글_ 윤지영 변호사

형식적인 의미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일한 차이는 일하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다.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만 빼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든 면에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열등한 대우를 받는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빈곤율은 정규직 노동자 빈곤율의 3배 이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 비율이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 노동자가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2~3%대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비정규직 노동자는 바로 계약 갱신의 거절, 즉 사실상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는 기간 종료를 이유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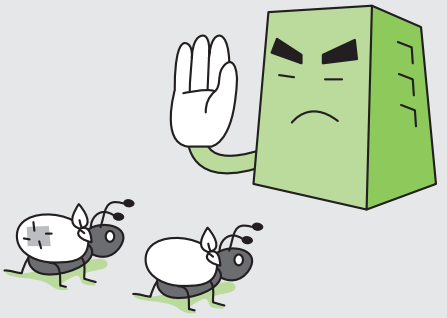

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점점 더 낮아진다.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파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간접고용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소, 경비, 시설 관리처럼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일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매우 높다. 제조업처럼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에서도 도급이라는 미명 하에 간접고용이 횡행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청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원청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의 임금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목소리를 내는 순간 원청 사용자는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원청 업체는 도급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간접고용에는 이익을 챙기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책임을 지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언젠가부터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소위 노동빈곤층이 많아지고 있다.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삶 자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존중 받지 못하고 노동권이 탄압 받는 사회에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7. 성소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 뿌리 깊은 편견과 일상적인 차별로 인하여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며,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감은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사건 공개 변론 등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과 함께 성소수자와 관련한 법제개선 및
일상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분류결정의 동성애 편견, 위법성을 확인받다

≫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취소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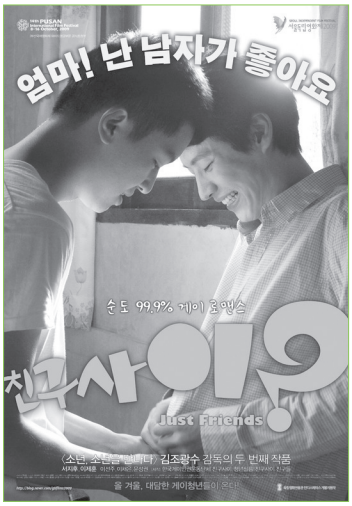

영화 〈친구사이?〉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영화사 '청년필름'이 공동 제작한 영화로, 20대 남성 동성애자인 주인공이 군 복무 중인 애인을 면회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입니다.

공감은 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0년 9월 서울행정법원은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및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동성애자 차별하는 군형법은 위헌

≫ 군형법 제92조 공개변론

공감은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위 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및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군대의 특수 형법 조항으로서, 남성간 성교를 비하하는 용어인 계간(鷄姦)이라는 용어로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처벌 대상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타추행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공개변론에서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ㄱ) 해당 조항에 따라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ㄴ) 병영 내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인들이 공개된 장소나 근무시간에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규율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이를 징역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수단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 기강을 병사의 기본권(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과잉원칙에 위반하며, (ㄷ)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같은 행위를 두고 동성애자들인 경우는 처벌하고, 이성애자들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불공정한 적용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성정체성은 교도소에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공감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구금시설 트랜스젠더 인권'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남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여성용 의복과 호르몬치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성기를 절단하는 자살시도를 한 MTF(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 트랜스젠더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청구원인은 크게 3가지로, 1) 의학적으로 성주체성장애가 있는 A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진단 및 검사, 치료 등 적절한 의료적 처우를 취하지 않아 A가 자살시도에 이르게 한 점, 2) 성정체성에 적합한 의복 등 사용을 불허한 점, 3) 자해 및 자살우려자로 보고된 A의 자해,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들었습니다. 2011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이유로 담당교도관들이 원고의 자해,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점만을 인용하였으나, 나머지 청구원인은 기각하여, 구금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들이 자유의 제약이라는 형벌 외에 겪게 되는 이중의 고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아쉬움이 남는 판결입니다. 공감은 향후 항소심도 지원하고, 관련단체들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성애와 청소년, 다양성의 존중

글_ 장서연 변호사

동성애에 대한 혐오, 편견, 비합리적인 공포심은 '청소년보호' 라는 명목으로 더욱 과장되고 확산된다. 영화 '밀크' 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 라는 구호 하에 동성애자 교사들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1970년대 미국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 교사들이 아이들을 동성애자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 동성애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한국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예인 홍석천씨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이후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였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권기준으로 인정받고 있고, 의학적으로도 동성애는 이성애, 양성애와 동등한 입장에서 가치중립적인 성격으로 진단,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동성애는 그 자체로 청소년들의 모방위험이 높은 것,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친구사이'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라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을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영화 '친구사이'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영화사 '청년필름'이 공동 제작한 영화다. 20대 남성 동성애자인 주인공이 군 복무 중인 애인을 면회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담은 영화이다. 이 영화는 동성애자들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밝고 유쾌하게 그리면서도, 주인공이 면회 신청서의 관계 란에 "애인"이라고 적었다가 다시 새까맣게 지우고 "친구"라고 적는 장면 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관계를 인정받거나 드러내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대다수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아픔도 사실적이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다른 영화들과 비교하여 이 영화의 구체적인 표현수위가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청소년관람불가'로 결정한 것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 불편함이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과 편견을 강화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폭력, 차별을 조장한다. 청소년들에게 비교육적인 것은 오히려,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아닐까?

8. 공익법률

공감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HIV 감염인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법제개선운동,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활동, 해외 한국 기업 감시활동 등 우리사회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합동 신문소는 한국판 관타나모 수용소?

≫ 북한 이탈주민 불법구금 및 부당처우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정보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합동신문은 법적 근거 없는 '불법구금'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감은 2010년 8월 사실상 불법구금과 다를 바 없는 합동신문과 그 과정에서 북한 이탈주민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간첩죄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절차적 권리의 전면적인 부정, 반인도적인 처우 등 국내에 존재하는 최악의 구금형태인 합동신문은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아픈 역사를 외면하는 정부에 이의 있습니다!

≫ 사할린동포 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사할린동포는 일제 시대 강제 동원되어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 역시 강제동원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해서 군대 내 불법행위마저 신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_ 박영아 변호사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올 봄에 공감에 합류한 후 맡게 된 여러 건의 군의문사 사건에 관한 제 짧은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의문사사건이란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희생되었음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제기하는 소송 사건들이며,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일단 생략합니다.

제가 맡은 군의문사 사건은 모두 타살이 입증되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일견 자살로 보이는 사망사건의 경우,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 하에 사건의 조기수습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 결과, 수사가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심지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마저 여기저기 포착됩니다. 망인은 "군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살한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로 간주되며,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애원한 부모는 "민원인"의 취급을 받습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비로소 자살이든 타살이든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가혹행위의 진상들이 밝혀지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순직임을 인정하는 법무부(경비교도대)와 경찰(전의경)과 달리, 국방부와 보훈처는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무시합니다.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경우에도 국가보훈처는 사건을 예외 없이 대법원까지 끌고 갑니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과다업무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자살한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도 비교됩니다.

▷ 이 글은 2010년 10월 공감뉴스레터에 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군 당국의 태도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형언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하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한 것입니다. 제가 맡은 모든 사건에서 주변인, 동료부대원 또는 상관들의 증언들에 의해 망인이 최선을 다하여 군복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죽음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이유를 불문하고,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은 개인의 잘못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심지어 그와 같은 가혹행위가 군 생활의 일부라는 취지의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회피하기 위한 극단적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소설가도 차용하기 힘든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당연히 마치게 되는 군복무를 피하기 위하여 자살을 할까요.

국방의무가 "신성하다"고 해서 군대 내 불법행위마저 신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엄정한 규율과 불법행위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병의 징병, 훈련, 복무, 내무생활, 그리고 사망원인에 대한 수사 모두가 전적으로 군 당국의 책임과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은 그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그 책임을 전적으로 국방의무를 다하려 한 죄밖에 없는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자행된 가혹행위의 결과 생명을 잃은 젊은이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자살이라 하더라도,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 없이 큰 희생을 치렀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방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의마저 거부하고 있는 국가의 태도를 바꾸어줄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봅니다. 국방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의마저 거부하고 있는 국가의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공감은 법조인, 예비법조인, 학생 등의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 중개하고, 공익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익법 활동을 활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인턴쉽 제도와 인권법 캠프 등을 진행하며, 로펌이나 법조인이 공감의 활동에 재정지원 또는 직접 참여하도록 하거나 공익단체를 중개하여 공익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로펌 공익법활동 확대를 위해 논의의 장을 열다

≫ 로펌 공익활동 간담회

공감은 2010년 12월 1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20대 로펌 공익활동 담당변호사들이 참가한 공익활동 간담회를 주관하였습니다. 위 간담회에서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로펌에서 재정적 지원 및 지도를 하여 공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스쿨 졸업생에게 실제 공익활동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미국의 펠로우쉽 제도를 비롯하여 미국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국내 로펌들의 공익법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이와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 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공익법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과 공감하다

≫ 공감 인턴쉽제도

공감은 매년 2회 정기인턴을 선발하고, 비정기적으로 특별인턴을 선발하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제1기 인턴부터 2010년 제12기 인턴까지 300여 명의 인턴들이 공감과 함께 하였습니다.
공감 정시 인턴은 국내 · 외 법률문헌조사, 홍보, 운영의 4개 영역으로 선발되어 6개월간 200시간 이상 담당 구성원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원활동을 통해 재능을 기부하는 그들의 노력과 땀은 공감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 공감 제11기 인턴

기은혜, 김미진, 김연주, 김연화, 김지원, 김지현, 김한준, 박효진, 양가을, 양승미, 이강원, 이영주, 이정인, 이태영, 조수민, 최원주, 한정수

≫ 공감 제12기 인턴

강정은, 강찬, 고한나, 구자연, 김우연, 김정아, 김현경, 박노민, 박지숙, 반승혜, 오진숙, 유진아, 윤자영, 박노민, 박지숙, 반승혜, 오진숙, 유진아, 윤자영, 이상민, 이영주, 이예화, 이진주, 이혜민, 장윤호, 조용수, 조윤진, 최민형, 홍세희

≫ 특별 인턴

Marrisa Bonnici

함께, 힘이 되는 사람들

≫ 공감 펠로우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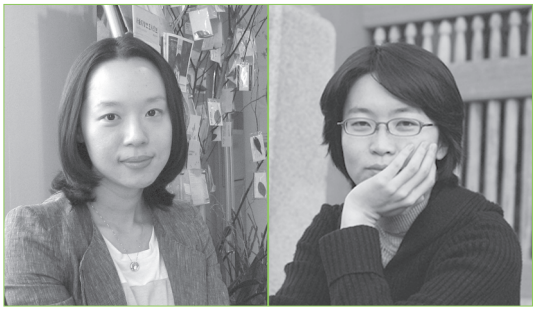

공감은 국내외 변호사, 학자, 활동가 등 전문가들이 인권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펠로우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1년 까지의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펠로우들은 안정적이고 직접적으로 공감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신윤진 펠로우(변호사, 전 대구지법 판사)가, 7월부터는 김정혜 펠로우(연구원, 서울대 법여성학 박사과정 수료)가 공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감 펠로우쉽

한 달에 한 번, 함께 사회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

≫ 공감 월례포럼

공감은 매월 인턴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하고 진행하며, 일반에도 공개되는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에도 총 8회의 월례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월	주제	강연자
1월	3XFTM-트랜스젠더에 관한 다큐멘터리	김일란 감독, 출연배우
4월	사회권1-노동운동 : 길은 복잡하지 않다	이갑용(전 민주노총 위원장)
5월	사회권2-기본소득에 대하여	곽노완(서울시립대 교수)
7월	사회권3-건강권,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10월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남기	김원영(서울대로스쿨)
11월	낙태, 살인인가, 권리인가?	윤정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구원)
12월	4대강사업의 법적쟁점	정남순(환경법률센터)

공감 월례포럼

공감과 함께한 여행

글_ 이강원 11기 인턴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 "처음처럼" 신영복 (공감 기부 신청 카드 속 글) –

공감과 함께 한 6개월의 짧았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경험했던, 가장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책을 통해 배운 사회정의와 인권이라는 개념들이 머리에서 슬그머니 가슴으로 내려오던 그 때, 저는 공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사는 이 사회의 현실과 부딪혀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의 발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 온기를 퍼트리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 나와 같은 열정으로 이곳에 모인 청춘들이 있었습니다.
"노동3권을 달라~! 추노, 환경파괴로 인해 녹고 있는 빙하 위에 북금곰–죽음의 트리플 악셀, 누구를 위하여 기준을 매기나(그리고 차별을 정당화하는가), 빈곤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무엇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첫 만남에서 나온 노동 · 환경 · 차별 · 빈곤 등에 대한 문제의식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술잔에 드리운 그림자가 깊어져 갈 때, 현장을 누비는 변호사님들과의 이야기는 사뭇 진지해지고 있었고, 세상을 향한 나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1년 이상을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법이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부당한 차별 속에서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민국을 피해 살아야 하는 도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소위 '선진의 노동현장'이라 하지만, 공장주의 임금착취와 부당한 대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흔히 겪어야 하는 일이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그분들이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와 현행 제도의 문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당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삶의 애환을 좀 더 이해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함께 일하는 인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휴식을 하는 동안 담소를 나누며 그 들 또한, 뜻 밖의 현실에 직면하여 비슷한 당혹감과 고민을 갖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현대판 씨받이, 성매매, 인신매매…. 내 머릿속엔 이미 지난 일들처럼 느껴지는 단어들이지만,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에게는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영문도 모른 체 자신이 낳은 아이의 얼굴도 한번 못보고 쫓겨나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또한 가축처럼 사고 팔리며 자신의 성을 바쳐야 했던 이주 여성들의 이야기는 더욱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이면서도 정당한 보호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던 그들의 억울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님들과 그러한 아픔과 안타까움을 공감하며 비로소 '공감'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모두가 공감에서 한, 긴 여행 속 기억들의 편린입니다. 서로가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일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순진함이며 남을 누르고 더 잘 살아야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다 하는 것이라고도 배웠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고민하며 살아왔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남겨진 삶에 대한 선택일 뿐이라는 것을 공감에서의 긴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공감과 그 선택을 같이 했습니다.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세상과의 첫 키스를 공감과 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과 함께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배를 탔습니다.

아직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머리에서 가슴, 그리고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을 언제나 공감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볼 때마다 공감과 했던 첫 키스의 추억을 떠올릴 것입니다.

‘없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글_ 김정혜 펠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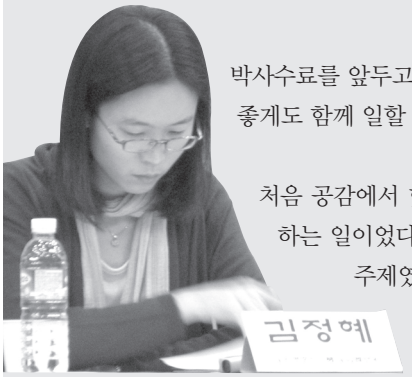

박사수료를 앞두고 있던 중 아주 우연히 공감의 펠로우쉽 제도를 알게 되었고, 운 좋게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처음 공감에서 했던 일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 13년치를 분석하는 일이었다. 젠더법 연구자로서 ‘성폭력’은 그동안 많이 접하고 고민했던 주제였지만 ‘장애’는 처음이었다. 공감의 인턴들, 구성원들과 토론하고 무수한 판결문과 참고자료를 읽으면서 장애라는 영역에 한 걸음씩 다가갔다. 공감을 통하여 관련 단체의 열정적이고 사려 깊은 활동가들을 만났고, 장애학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었다.

지금은 성희롱 실태조사 및 대안연구를 공감 구성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하고 성희롱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존의 제도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내오려고 고민한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공감이 가진 가능성이고 공감이 존재하는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운동단체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은 공감을 만나 지금의 현실 속에서 목소리를 얻고 형체를 획득한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외침은 공감 받지 못하면 들리지 않는다. 인정받지 못했던 무엇, 그래서 ‘없다’고 여겨졌던 것, 그로부터 실체를 이끌어내어 눈에 보이게 만드는, 그리하여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공감은 우직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해 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 한 발을 담그게 되어 참, 좋다.

김정혜 펠로우는 서울대 법여성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0년 7월부터 공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판결문 분석 프로젝트, 요양보호사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안 작업, 인신매매 관련 법률 개정안 작업 및 여성노동자 성희롱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 한 눈에 보는 공감

1월

[여성인권]
- 전국여성노조 해고무효사건 서면작성
- 민변 여성인권위 빈곤과 노동팀 회의 참여
- 두레방 이주여성 쉼터 방문 및 법률매뉴얼 제작 기획
- 부당한 혼인해제에 대한 혼인무효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주여성인권포럼 : 이주여성의 체류권 실태 논의
- 면접교섭권 침해 몽골여성-B씨 소송지원 면담

[장애인권]
- 장애차별상담사례 토론회 참여
- 경원사회복지회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원 장애인 성교육 강사과정 교육

[이주와 난민]
- 김해 외국인 상점 출입국단속 국가배상 사건 일부승소
- 대한변협 인권위 이주인권소위 참여
- 대한변협 인권위 이주매뉴얼 집필진 간담회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공익위원회 참여
- 출입국 관리법 위반사건 선고

[빈곤과 복지]
- 구룡마을 전입신고거부취소 소송 개시
- 군의문사 사건 유족비해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
- 도봉구, 양천구 주민소송 항소심 변론
- 재개발/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집단소송 변론
- 기초생활보장 권리 찾기 행동 회의 참여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회의 참여

[국제인권]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의장단 회의 참여
-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세계한인변호사회 특별 간담회 참여
- 유엔 사회권위원회 NGO대응 전체평가모임 참여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참여
- 민변 로스쿨 실무수습생 국제인권 교육
- 국제인권네트워크 회의
- 해외한국기업대응회의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 방문 및 면담
- 공익제보자 해고무효 사건 변론

[공익법 일반]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의견서 작성
- 숙식비 공제로 인한 임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반소장 작성
- 용산참사 사망자 장례식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주관 해외입양안연대 '입양법제 개정 논의' 강의
- 성주체성장애 수형자 처우 및 자해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 변론
- 용산법대위 구속적부심 청구, 집시법 위반 중 절대적 금지사유 중 불법폭력집회 개최 부분과 관련된 법리검토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정책간담회 참여
-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소송 변론
- 2010년 미국공익법 단체 탐방

[공익활동중개]
- 민변 로스쿨 실무수습생 '공익법 활동' 교육
- 공감 1월 월례포럼 '3xFTM' 다큐멘터리 상영(감독 및 출연배우 미팅)

2월

[여성인권]

- 연예기획사에 의한 성폭력 및 성 착취 사건 당사자 면담
- 이주 여성인권포럼 '다시 중개업법이 문제다' 토론회 토론
- 이주여성체류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의 회의 참여
- 민변 여성인권위 여성폭력방지팀/빈곤과 노동팀 회의 참여
- 임신 · 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 참여
- 아시아인권센터 주최 제6회 청년인권활동가워크숍 '이주여성의 인권' 강의
-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두레방(평택) 당사자 및 상담원 '수사와 형사재판절차' 교육
-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ction Watch Asia Pacific(IWRAW) 주최 'A Training on the Optional Protocol to CEDAW for Lawyers' 교육 참여(네팔 카트만두)

[장애인권]

- 정신장애 가족 이웃에 의한 집단괴롭힘 사건 증인 진술서 제출
- 청각장애 해직 교수 명예훼손사건 기록 검토 및 사실조회 신청
- 장애등급 변경 위탁심사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서 작성

[이주와 난민]

-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상담지기 '이주민 관련 법률' 강의
- 법무부 국적난민과 난민지원단체 간담회 참여
- 변협–국제이주기구 이주정책연구원 간담회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공익위원회 참여
- 국제이주기구 이주정책연구원 이민관련 기초연구 토론회 '이민관련법 기초연구' 발표
- 난민 관련 MWTV 인터뷰
- 우간다 K씨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사전 변론
- 아시아인권센터 주최 아시아인권 포럼 '송출국과 목적국 간의 갈등과 이해를 통한 협력증진 모색' 토론회 참여
- 아시아인권센터 주최 아시아인권 포럼 '이주민의 법적 지위 개선' 발표
- 중국 C씨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사건 변론

[빈곤과 복지]

- 달터마을 전입신고수리거부건 관련 면담
- 기초생활권리찾기행동 회의 참여
- 근로능력평가기준 관련 기초생활권리찾기행동과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보장관리단 단장 및 기초법 담당 사무관 간담회 참여
-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 서명작업 참여(영등포, 돈의동, 창신동 쪽방 지역)
- 글리벡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보조참가 준비 모임

[주민자치]

-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의견조정을 위한 주민모임

[국제인권]

- 국제인권네트워크 참여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전화 회의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참여
- 아시아 이주 프로젝트 회의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국가인권회 간담회 참여

• 동아시아 난민권리 심포지엄 준비모임

[공익법 일반]

• 해외입양법제개선모임 참여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참여
• 공안기구 감시모임 주관 '국가안보와 국제인권 기준' 강의
• 공익제보자 재심결정취소소송 감정기관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군의문사 유가족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소송 참고자료 제출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 자문
•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구속사건 형사변론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불허처분 검토 의견서 작성
• 사할린 한인 국적 확인 자문
• 재외동포법 무국적자 배제 규정의 위헌성 자문

[공익활동중개]

• 한국자원봉사협회,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 주최 전국 로스쿨 재학생 자원활동 캠프 '법과 나눔' 강의
• 제3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3월

[여성인권]

• 부당한 혼인해제 피해 베트남 여성 가사소송 변론
• 대리모 유용 및 양육권침해 베트남여성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
• 외국인보호소에 단속된 필리핀 이주여성의 부당한 혼인해제에 대한 가사소송 변론
• 김춘진 의원실 주관 인신매매법 제정 자문 TF 회의 참여
•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대책회의 참여
• 대한변호사회 의뢰 이주여성 혼인 및 이혼절차에 대한 법률매뉴얼 원고 작성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원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폭력 관련 법"
•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두레방 법률지원 회의 : 사건별 진행상황 검토 및 자문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월례회/빈곤과 노동팀/여성폭력팀 회의 참여

[장애인권]

• 정신장애 가족에 대한 이웃의 집단 전출요구 사건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전체 패널 참여
• 수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률지원

[이주와 난민]

• 세계한인변호사회–필리핀 대사관 공동주최 필리핀 공동체 대표 고용허가제 법률교육 강의
• 안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 개정에 관한 강의
• 중국인 P씨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항소심 진행
• 버마인 A외 7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항소심 진행
• 사할린 위로금 소송 항소심 진행
• 길거리 불심검문 출입국단속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 필리핀인 M씨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 (사)이주민과 함께 주최 '출입국관리법 개악과 다른 나라의 미등록 정책' 강의
-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초청) 항소이유서 작성
- 사할린 한인의 국적확인 관련 의견서 작성
-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작성(외국인 인권 기초연구 & 외국인 법제연구)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인권소위원회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공익위원회 이주민지원팀 회의
- 난민정책개선모임 참여

[빈곤과 복지]

- 재개발/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집단소송–흑석5구역, 응암8구역 항소심 변론
- 기초생활권리찾기 행동 회의 참여
- 갈월동 쪽방 화재 대책회의 및 피해실태 조사
- 일본 동해 생활보호이용자 지원 네트워크와 한국 반빈곤단체 교류회 참여
- SBS 뉴스추적 인터뷰 :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호 실태에 대하여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아동교육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 심사위원 참여
- 이주아동청소년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법률위원회의

[국제인권]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인권단체 간담회 참여
- 권리에 기초한 사법접근권 아시아 회의 참여(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 이주변호사 간담회 참여(필리핀 마닐라)
- 해외한국기업 대응 실무회의 참여
- 국제인권네트워크 회의 참여

[공익법 일반]

- 용산 미디어 활동가 공무집행방해 정식재판건 참여
- 반차별공동행동 전체 회의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및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주최 유언장쓰기 캠페인 참여
- 글리벡 약가인하소송 보조참가 준비 모임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공익위원회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참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회 참여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회의
- 해외입양인연대(G.O.A.'L) 노동법 법률교육 강의

[공익활동중개]

- 법무법인 원 공익위원회 공익활동 특강
- 서울 YMCA 대학생 대상 법률 강의 : "이주아동의 실태 및 법적 쟁점"
- 전남대 인권법 학회 간담회 및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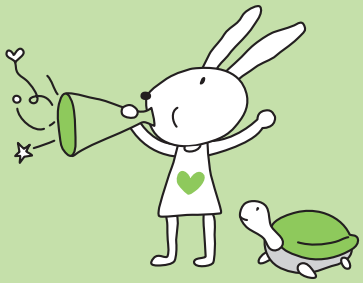

4월

[여성인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및 항고이유서 제출
-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한 의견 제출 관련 반성매매단체 회의 참여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매뉴얼 준비회의 참여
-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 지원 관련 법률 자문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폭력방지팀/빈곤과 노동팀/성매매방지팀 회의 및 세미나 참여

[장애인권]

- 시설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변론
- 청각장애 부당해고 해직 교수 명예 훼손 사건 증인신문
- 수사절차상 인권침해 지적장애 청소녀 대리 국가배상청구 소송 변론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경찰 폭력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참여
- 탈시설 정책위 기획소송팀 회의

[이주와 난민]

- 김해외국인음식점 출입국단속 항소심 변론
- 버마 A씨 외 7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항소심 변론
- 세계한인변호사회-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주민지원사업 관련 간담회 참여
- 대한변협 인권위 이주외국인인권소위 회의 참여
- 유엔 난민기구 2010년 협력사업 관련 면담
- 난민정책개선모임 참여

[빈곤과 복지]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회의 참여
-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국회의원 곽정숙 의원실 주최 토론회 :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평가기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자 참여
- 재개발/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집단소송 항소심 변론

[국제인권]

- 동아시아 난민 NGO국제회의 '새로운 난민법 제정을 향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 발표(피난처-일본난민협회 주최)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NGO보고대회 참여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인권단체 2차 간담회 NGO 보고서 총론 발표 참여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참여
- 국제민주연대 해외한국기업 실행위원회 참여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회의 참여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동아시아워킹그룹 회의 참여
- 유엔 난민기구 구금 라운드테이블 참여

[공익법 일반]

- 명예훼손 기소 이주노동자방송국 대표 공판기일 증인신문
- 교도소 내 성주체성장애 제소자 처우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 용산범대위 집시법 위반 사건 변론
-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취소소송 관련 회의 참여
- 제주인권회의 기획회의 참여
- 원전 수주계약 정보공개건 검토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참여
- 대한변협 인권위 일제피해자지원소위원회 회의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해외-한국 공동이사회 참여 및 공익활동 현황 발표 (중국 상해)
-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파기환송심 준비서면 작성 제출
- 대한변협 인권위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 일본변호사연합 간담회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공익위원회 참여
- 공익제보자 해고무효사건 상고심 변론

[공익활동중개]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특강
- 사법연수원 국제인권 특강
- 공감 4월 월례포럼 "길은 복잡하지 않다" (이갑용, 전민노동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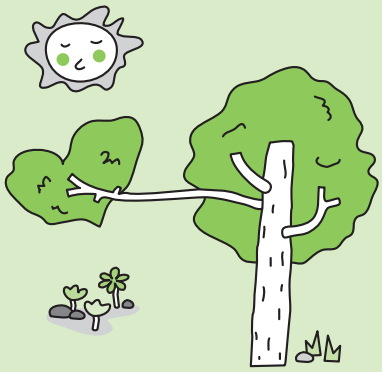

5월

[여성인권]

- 필리핀-한국 성산업 부문 이주실태 조사
- 인신매매 사례 대응을 위한 법률매뉴얼 준비회의 참여
- 외국인여성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불기소사건 항고이유서 제출
- 국회의원 김춘진 의원실 주최 '성착취와 인신매매 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자 참여

[장애인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실무교육 "장애인 고용 차별의 판단과 구제절차"

[이주와 난민]

- 한인 국적 확인 관련 사할린 현지 방문조사
- 이주정책개선모임 회의 참여
- 외노협 주최 정책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 토론자 참여
- 남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주노동자 강의
- 난민정책개선 모임 회의 참여
-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협력사업 관련 회의 참여
- 우간다 K씨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 변론
- 이주정책개선모임 참여
- 버마행동 상담-신청취소로 인한 구금
- 여권 허위기재로 인한 결혼체류기간 연장 불허건 상담

[빈곤과 복지]

- 재개발/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집단소송-흑석6구역 항소심 변론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회의 참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참여

[주민자치]

- 지방의회 · 의원 의정비 환수 주민소송(양천구, 도봉구) 항소심 변론

[국제인권]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담당자 면담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NGO 간담회 참여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회의

[공익법 일반]

-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취소소송 변론
- 성주체성장애 수형자 부당처우 및 자해사건 손해배상청구 변론
- 명동대성당 5월 문화예술축제 리빙라이브러리 발표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방한 NGO 실무회의 참여
- 흉악범죄처벌강화론 끝장토론 참여
-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상담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회의
- 고려대 CLEC 국제인권클리닉 등 주최 연합세미나 "기업의 국제인권침해에 대한 국내소송가능성: 버마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공익활동중개]

- 원광대 로스쿨 공익인권법센터 강의 '소수자, 법, 그리고 인권'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특강 '이주노동자와 난민'
- 공감 5월 월례포럼 "기본소득에 대하여" (곽노안, 서울시립대교수)

6월

[여성인권]

-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세션2(인신매매 피해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발표
- 인신매매 사례대응 매뉴얼 준비 회의 참여
- 민변 여성인권위 빈곤노동팀/여성폭력방지팀/성매매방지팀 회의 참여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사건 재정신청서 제출
- 필리핀-한국 성산업 이주실태 현지 방문조사
- 베트남여성 친권자 변경 가사소송 변론
- 몽골이주여성 친권자 변경 가사소송 변론
- 현대판 씨받이 사건 피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 일부승소 1심 인용

[장애인권]

- 박OO외 8명 대 종로구청 손해배상청구 사건 변론
- 장애 차별 부당해고자의 명예훼손 피고소 사건에 대한 형사변론
-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수사절차상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변론
- 지적장애가족에 대한 이웃의 집단 괴롭힘 형사고소 사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

[이주와 난민]

- 이주정책개선모임 참여
- 서울외노센터 주제 몽골이주민 대상 인권교육
- 퇴직금 청구 소송 소장 접수
- 난민정책개선모임 참여
- 사할린 동포 위로금 소송 변론
-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기획회의 참여

[빈곤과 복지]

- 기초생활권리행동 회의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강제퇴거금지입법 워크샵

[주민자치]
•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비 환수 주민소송 항소심 변론

[국제인권]
• 유엔 난민기구–비정부기구 국제회의(UNHCR Annual Consultations with NGOs) 참여

[공익법 일반]
•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취소소송 변론
•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변론
• 군형법 추행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인용결정
•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 변론
• 대한변협/일본변호사연합회 공동 심포지엄(법의 지배와 일제피해자 권리구제) 토론자 참여
• 수하르조 고용허가제 헌법소원심판 보충이유서 작성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참여
• KBS 시사토론 참여 :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 백혈병 환우회 주최 의료법 개정 기자회견 참여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참여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결합

[공익활동중개]
• 일본 동경 이케부쿠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단 간담회

7월

[여성인권]
• 필리핀 여성 친권자 지정 심문기일 변론
• 의정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사건 항고 대리
• 몽골 결혼이주여성 가사심판 심문기일 변론
• 정신질환 남편에 의해 살해된 베트남 여성 사건에 대한 고발장 제출
• 장애인 성폭력 쟁점 해결 프로젝트 진행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월례회/빈곤과 노동팀/여성폭력방지팀 회의 참여
• 서울대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 의뢰 의견서 작성
• 위장결혼 입국 후 성매매 강요 받은 사건에 대한 개입을 위한 논의
•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아동성폭력 피해 법률매뉴얼 회의
• 인신매매 사례 대응 소책자 회의 참여
• 젠더네트워크포럼 참여
• KBS 생방송 오늘 인터뷰 : 결혼중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장애인권]
• 박OO 외 8명 대 종로구청 손해배상청구 변론
•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수사절차상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소송 일부승소
• 장애차별 부당해고 청각장애 교수 명예훼손 사건 형사변론
•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자 참여
• 성북시각장애인 노동법 교육

[이주와 난민]
• 이주노동자 재고용연장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 출입국단속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 K씨 허위초청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론
• 뉴웬 퇴직금 청구의 소 제기
• 우간다 K씨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변론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대상 인권 교육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외부전문가로 참여
- 국가인원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토론자 참여
-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권리토론회 토론자 참여
- 이주정책개선모임 회의 참여

[빈곤과 복지]

- 글리벡 약가인하처분취소 사건 보조참가소송 대리
-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 행사 생활법률 강의
-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
- "아동인신매매와 국가 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및 한국의 입양제도" 토론회 토론자 참여
- 해외입양제도 개선을 위한 입양포럼 토론자 참여(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민자치]

- 도봉구의회 구의원 의정비 환수 주민소송 항소심 변론

[국제인권]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참여
-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참여
- 해외한국기업감시모임 참여

[공익법 일반]

- 도시가스 검침원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 변론
- 북한이탈주민 불법구금 및 부당한 처우 관련 국가배상 청구소송 변론
-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등사명령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변론
- 사할린동포 위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 변론
-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복지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노인복지시설의 인권문제
- 한국인권재단 주최 '2010 제주인권회의 참여 및 발표(「인권의 정치', 그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법치주의와 인권」, 「사회권 실현을 위한 공익소송과 사법적극주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조례제정팀 참여
-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발표
- 반차별공동행동 쟁점포럼– '표현의 자유와 차별의 경계' 발제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회의 참여
-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기타 발표문 작성

[공익활동중개]

- 민변 로스쿨생 공감 특강
- 공감 7월 월례포럼 "건강의 소중함 건강권의 소중함"

8월

[여성인권]
- 대구 정신병원 직원에 의한 정신장애인 성폭력 사건 관련 의견서 작성
-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대응모임 참여

[이주와 난민]
- 이주노동자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 변론
- 필리핀 M씨 강제퇴거취소 소송 변론
- 중국인 P씨 난민인정불허취소사건 항소심 변론
-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 난민정책개선모임 참여

[빈곤과 복지]
- 노숙인추모제 주최와 참가를 이유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변론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강제퇴거금지입법 워크샵 참여

[국제인권]
- 국제민주연대 주관 포스코 인도제철소 사업 관련 인권 실태조사 참여 (인도 오릿사)

[공익법 일반]
-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취소소송 원고 승소
- 조선적동포 여행증명서발급거부취소 소송 변론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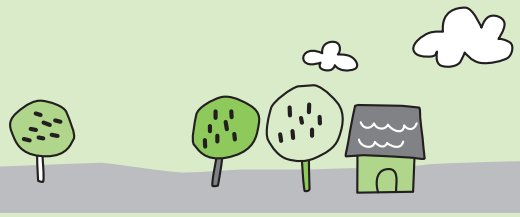

9월

[여성인권]
- 서울대 성희롱 · 성폭력 상담소 의뢰 의견서 작성
- 장애인성폭력 쟁점 해결 프로젝트 워크샵 참여
- 인신매매법제정 대응 TF 회의 참여
- 몽골 결혼이주여성 가사사건 이행명령 사건 기일 진행 및 사전처분 신청
- 민변 여성위원회 빈곤과노동팀, 성매매방지팀, 가족법팀,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의 참여

[장애인권]
- 장애차별 부당해고된 청각장애인 당사자의 명예훼손 사건 변론 선고유예 판결 선고
- 수사절차상 지적장애인 피의자의 인권침해 손해배상 사건 선고 일부승소
-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세대전출강요사건 대책위원회 활동
- 성년후견제도 입법촉구 기자회견
- 전국 장애인차별상담 전화 상담원 교육

[이주와 난민]
- 중국 P씨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항소심 변론
- 버마 A씨 외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항소심 변론
- 필리핀 M씨 강제퇴거취소소송 진행
-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사건 변론 준비
- 국가인권위 방문조사팀 회의 참여
- 난민정책개선모임 참여
- 이주정책개선모임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공익위원회 참여
- 난민법 제정안 관련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면담
- 국가인원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회의 발제

[빈곤과 복지]
- 생계급여변경처분취소 항소심 및 사전처분 신청

• 민변 여성위원회 빈곤과노동팀, 성매매방지팀, 가족법팀,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의 참여

[국제인권]

• 국제민주연대 포스코 인도제철소 사업 관련 인권실태조사 참여
• 국제인권네트워크 회의 참여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참여
•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전화 회의 참여
• 해외한국기업감시모임 참여
• 아시아태평양변호사회의(COLAP) 참여
 – "한국, 필리핀, 인도의 최근 사회권 현황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발제
 – "한국의 이주민 관련 법칙 쟁점과 국제적 법률네트워크의 필요성" 발제

[공익법 일반]

• 공익제보자 해고사건 변론
• 조선적동포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변론
•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청구소송 변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관악지청 상대 정보공개촉구공문 발송
•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이사회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총회 참여
 – "최근 프로보노 동향" 세션 사회
 –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시카고 한인변호사회 공동주최 한국법 법률상담 프로그램 강의
• 2010년 제주인권회의 참여 및 발제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조례제정모임 참여
• 민변 사법위원회 회의
• 법무부 형법총칙 개정대응모임 참여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참여
• 35세미만 전세금대출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회의 참여
• 가족구성연구모임 회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 초중등교육법 개악 관련 기자회견
• G20 특별법의 문제점 질라라비 기고

•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인터뷰 : 법무부의 입양허가제 추진 발표

[공익활동중개]

• 사법연수원 '여성과 법' 특강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법적 쟁점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특강 : 장애인차별 문제와 소수자 인권
• 충남대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특강 : 공익변호사 활동과 전망
•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 인터뷰 : 공감 활동 전반
• KBS 제2라디오 '함께하는 세계 이광용입니다' 인터뷰 : 공감 활동 전반
• 평화방송 '생명은 사랑입니다' 인터뷰 : 공감 활동 전반

10월

[여성인권]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개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결혼중개업법 교육
-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주최 여성장애인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 · 가정폭력 상담원 보수교육
- 외노협 주최 토론회 참여 : 「이주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제안: 중국동포 및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발제
- 인신매매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 TF 회의 참여
-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률안내서 집필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사소송 변론
- 몽골 결혼이주여성 가사소송 조정기일

[장애인권]

- 성남 장애인복지관 법률교육 : 장애인 인권 관련법
-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노동법 교육
- 정신장애가족 강제전출 및 입원강요 사건 대책위 회의 참여
- 장애차별 부당해고 청각장애교수 형사 사건 변론
- 박OO외 8명 대 종로구청 손해배상청구 청구 사건 변론

[이주와 난민]

-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동 횟수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헌법소송 공개 변론
- 이주정책 개선모임 참여
- 난민정책 개선모임 참여
- 중국 W씨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사건 항소심 변론
- 중국 C씨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사건 항소심 변론
- 안산다문화가족사례관리네트워크센터 이주법률교육 강의
- 남양주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주 법률 교육 강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수요포럼 '난민법안의 배경 및 내용' 강의
- 세계한인변호사회 공익위원회 워크샵 이주관련법 강의
- 유엔 난민기구 · 공익법인 동천 공동주최 난민법률지원 교육 '국제법과 난민' 강의
- 일본 이주노동 법률가 대회 참여 및 발제
- 사할린 한인 국적 소송 준비모임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일제피해자소위 참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일본 내 한국사망자 소위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 회의 '판례를 통해 본 난민의 개념' 발제
- 무국적 관련 유엔 난민기구 주최 워크샵 참여(태국)

[빈곤과 복지]

- 가재울 3구역/4구역 주거이전비지급청구소송 변론
- 아현 3구역 주거이전비지급청구소송 변론
-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 워크샵 발제

[주민자치]

-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비 환수 주민소송 변론
- 도봉구의회/양천구의회 의원 의정비 환수 주민소송 항소심 변론

[국제인권]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 국제인권네트워크 회의
- 해외한국기업대응회의
- 일본변호사협회 일한외국인법제연구회
  - 동경공설법률사무소 간담회 참여
  - "이주민과 한국 법제" 발표
  - "한국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법제 지원의 현황과 과제" 발표

[공익법 일반]

-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지급청구 소송 관련 형사사건 변론
- 글리벡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보조참가 사건 변론
- 군의문사 사건 상고심 답변서 제출
- 형법 개정 대응 간담회 참여
- 어린이집 IPTV 설치 대응 회의 참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회 참여

[공익활동중개]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회의 참여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협약 체결
- 성균관대 로스쿨 실무수습 협약 체결
- 서울대 로스쿨 국제인권법 강좌 '판례에 나타난 난민의 개념' 발표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인권법 강좌 '국제인권변론' 강의
- 공감 10월 월례포럼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남기" (김원영,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 저자)

11월

[여성인권]

- 성매매 피해 필리핀 이주여성 고소 사건 변론
- 성매매 피해 필리핀 이주여성 평택 경찰서 조사 동행
- 정신장애인 대리 친딸 성폭행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장 제출
- 서울 YMCA 강의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법적 쟁점
- 용인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최 이주여성대상 법률교육
- 인신매매범죄처벌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주최 및 발제
- 인신매매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대응 TF 회의 참여
- 서울여성노동자회 '요양보호시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기획회의 발제
- 민변인권대회보고서 제출–여성노동현황
- '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 및 보호 방안' 토론회 토론 참여
- 민변 여성위원회 빈곤과 여성노동팀 회의 참여
- 유엔인권정책센터 CEDAW 세션 현지 로비의 실제 강의
- 비교공법학회 주최 심포지엄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안' 토론

[장애인권]

- 서울장애인시설협회 연수교육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여성 가족법 토론회 토론자 참여
- 고대 로스쿨 클리닉 군대이명사건 당사자 면담
- 탈시설 기획소송팀 회의
- 장애인법 연구법 준비모임 참여
- 지역주민의 정신장애가족에 대한 강제전출 및 입원강요 사건 재정신청 일부공소제기 결정

[이주와 난민]

- 버마 A외 7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 필리핀 A씨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변론
- 조선적재일동포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변론

- 우간다 K씨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변론
- 중국 W씨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변론
- Thematic Protection Learning Programme on statelessness (무국적자 보호관련 교육프로그램) 참여
- 출입국단속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건의 유가족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 '원어민교사 E-2 비자 출신국가 제한에 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서울대 사회대 사회학과 난민 강의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인권소위 참여
- 안산 외국인지원센터 고용허가제법 및 노동법 교육
- 유엔 난민기구&공익법인 동천 공동주최 난민법률지원 교육 '판례&본국정황보고서' 강의
- 민변인권대회 보고서 제출-이주노동분야
- 이주민과 함께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원고 발송
- '무국적 동포의 F-2사증 발급에 대한 의견서' 작성
- 난민법안 연구모임 참여
- 버마행동 난민신청자 간담회 참여
-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 K씨 면담
- 변협 인권위 일본 살인 피해자 사건 소위 참여
- 변협-일변연 일제피해자 심포지엄 협의모임 참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NGO 간담회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공익위원회 회의 참여
- 국회 '사할린 한인 관련 법안 공청회' 토론 토론자 참여
- 국회인권포럼 ·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 ·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주최, 난민사회권의 제도적 보장 : 현황과 과제 워크샵 '난민법안상 난민의 사회권' 발제
- 국회 법제사법위 난민법안 공청회 발제
- 한국일보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관련 기고
- CBS '우리가 사는 세상' 난민관련 인터뷰
- 평화방송 라디오 '날마다 행복충전' 난민 관련 인터뷰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이주 관련 인터뷰

[빈곤과 복지]

- 생계급여변경처분취소 변론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워크샵 참여

[주민자치]

- 의정비 환수를 위한 변론

[국제인권]

- 인권 기초사법접근권 아시아 컨소시엄(hrba2j Asia Consortium) '조직 운영과 사업 계획 의견서' 제출
- 한국인권재단 기업과 인권포럼 참여
- 버마가스개발프로젝트 대응모임 참여
- 민변 국제연대위 회의 참여
- 국제인권네트워크 회의 참여

[공익법 일반]

- 하나은행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진정서 제출
- 트랜스젠더 수형자 처우와 관련한 손해배상 변론
-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 청구소송 준비서면, 반소 답변서, 의견서 제출
- 글리벡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변론
- 법무부 인권국 워크샵 : '인권' 강의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이주아동 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 토론자 참여

• 민변 소수자위원회 차별금지법 워크샵 : 차별금지법안 쟁점별 검토 발제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문단 워크샵 참여
• 미신고집회 관련 피의자 신문 참여
•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회의 참여
• 반차별공동행동 회의 참여
• 서울어린이집 IPTV 설치 대응회의 참여
•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혁신 자문단 위촉식
• CBS 인터뷰–소외노동 관련

[공익활동중개]

• 제주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한국의 이주 법제, 관행 그리고 인권' 특강
• 고려대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특강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특강
• 인권위 사회복지사 대상 인권교육
• 법의 지배 프로젝트 10주년 세미나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협약 체결
• 제주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공익법 간담회 참여
• 서울대 로스쿨 실무수습 설명회
• 시사주간지 위클리피플 공감 관련 인터뷰
• Social Consulting Group(SCG) '프로보노 혁명' 인터뷰
• 공감 11월 월례포럼 "낙태, 살인인가? 권리인가!" (윤정원, 연구단체 건강과 대안 연구원)

12월

[여성인권]

• 몽골 결혼이주여성 가사소송 및 사전처분신청사건 변론
• 친딸 성폭행한 남편 상대 지적장애여성의 가사소송 보정신청
• 국제이주기구 주최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실천방향 모색' 컨퍼런스 토론 토론자 참여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주최 '사회서비스종사자 다문화 업무능력 배양교육' 법률 강의
• 인신매매피해자지원매뉴얼 발간 기념 토론회 발제
• 한국여성단체연합 모자보건법 개정 TF 회의 참여
• 인신매매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응 회의 참여

[장애인권]

• 장애정책포럼 : 폭력피해여성 관련 법제 발제
•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대책 긴급토론회 발제
• 변협신문 성년후견제와 변호사의 역할 원고 작성
• 서울시 시설장애인 자립생활지원네트워크 주최 〈주거복지사업 보고대회〉 참여
• 탈시설정책위 정책팀 회의 참여
• 충북 장애인권익옹호조례제정팀 회의 참여

[이주와 난민]

• 이주노동자방송국 대표 명예훼손 형사 항소심 변론
• 필리핀 A씨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 베트남 B씨 퇴직금 청구소송 변론
• 필리핀 M씨 강제퇴거취소 항소심 변론
• 우간다 K씨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 당사자 본인신문
•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보충서면 제기
• 이주노동자 S씨 사업장변경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 이주노조위원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 참여
• 국회 법제사법위 난민법안 공청회 발표
• 재일조선적 L씨 국적 관련 상담

[빈곤과 복지]

- 주거이전비소송 상고심 변론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TF 회의 변론

[국제인권]

- 유엔 난민기구 동남아시아 구금 워크샵 참여
- 국제인권네트워크 참여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제3차 회의 참여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회의 참여
- 해외한국기업대응 연대회의 참여

[공익법 일반]

-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변론
- 트랜스젠더 수형자 처우와 관련한 손해배상 변론
-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청구소송 변론
- 탈북자 불법구금 국가배상청구소송 변론
- 재심판정취소(공익제보사건) 변론
- 군의문사사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상고이유서 제출
- 민변 소수지원위원회 차별금지법 워크샵 : 차별금지법안 쟁점별 검토 발제
- 가족구성원연구모임주최 가족정책포럼 '가족상황차별에 대한 재정의, 차별금지법에 담기' 발제
- 서울시 교육청 주관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단' 자문
-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틈새 없는 주거권 만들기 모임 회의 참여
- 가족구성원 연구모임 회의 참여
- (가)차별금지법추진연대 전체회의 참여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참여
-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에서 공감에 감사패 수여

[공익활동중개]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신보건 교육
- 향린교회 인권주간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기본, 차별금지법' 특강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협약 체결
- 로펌 공익담당 변호사 간담회 참여
- 공감 12월 월례포럼 "4대강 사업의 법적 쟁점"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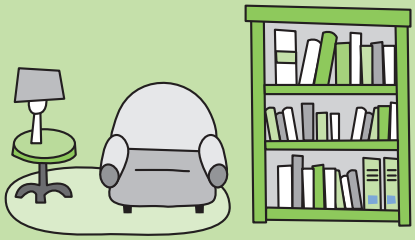

공감이 걸어온 길

연도	날짜	내용
2003	12월	염형국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근무 시작
2004	1월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변호사 근무 시작
	1.16	'공익변호사그룹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2월	김민경 간사 근무 시작 (~2005.5)
	2월	부안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찬반주민투표 준비위원회 변호사 파견
	3월	제1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 진행 (12개 공익단체)
	8월(~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반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활동)
	11월	제2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 진행 (12개 공익단체)
	12월	황필규 변호사 근무 시작
	12월(~현재)	버마 내 한국기업 인권감시활동 및 미국 하버드 로스쿨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 과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공동 제출
2005	2월(~12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 심의 관련 NGO 보고서 공동 제출 및 현지(스위스 제네바) 활동
	3월	윤정원 펠로우 근무 시작 (~2006. 2)
	3.21~4.7	전국 장애인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학교 진행
	3.24	공감 인턴쉽 프로그램 시작
	4월~12월	국제결혼중개구조 베트남 · 필리핀 현지조사 및 결혼중개업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5월	전영주 간사 근무 시작 (~2007.8)
	7월	제3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진행(13개 공익단체)
	8월	송성수 펠로우 근무시작 (~2006.1)
	11.2	법무법인 충정과 공익소송 업무협약 체결
2006	1월	자문위원단 구성 (15인)
	2월	제4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진행(11개 단체)
	2.22	공감 2주년 기념 후원행사 '공감과 공감하기' 개최
	4.19	37기 사법연수생 160명, 공익변호사기금에 기부약정
	6.1~12.31	차별에 맞선 소송–이주노동자 차별적 제도, 관행에 대한 기획소송
	6월~7월	우리는 선의의 파파라치–"차별적 국제결혼광고 반대 캠페인"전개 (차별적국제결혼광고대응을위한 공동행동)
	6월	권회 간사 근무 시작 (~2009.6)
	7.2	보험사의 장애아동 보험가입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8월	제5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시작 (7개 단체)

연도	날짜	내용
2006	9월	김미라 펠로우 근무시작 (~2007.2)
	9월	2006주민참여가이드북–주민직접참여제도실무매뉴얼 집필 (아름다운재단, 함께하는시민행동 발간)
	10.11~10.30	해외탐방–미국 공익법단체를 찾아서
	10.13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등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승소
	10.21~10.30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이사회 참석–NGO 반박보고서 제출
	11월	〈노인학대예방을위한법률매뉴얼〉집필및법률교육 (대한변호사협회, 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 발간)
	12.1	한국장애인인권상 정책개선부문 수상
	12.7	제20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상 수상
	12.3	정정훈 변호사, 제1회 무지개 인권상 수상
2007	1.11~8.20	황필규 변호사–Unversity of Oxford Centre on Migration, Policy & Society 파견근무
	2월	장서연 변호사 근무 시작
	3월	희망변론 프로젝트–공익단체 법률지원 진행(7개 단체)
	5.7	공익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학교 진행
	5월	〈이주노동자자원활동가를위한법률매뉴얼〉 발간 (외국인이주 · 노동운동협의회 공동기획)
	7월	〈아동학대사례개입을위한법률매뉴얼〉 집필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발간)
	6.22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산업연수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산업연수생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6.26	중국 민주당원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2008.11.15 대법원 확정 판결
	7.5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와 파트너십 체결
	7.21	지방자치단체 음식물처리장 설치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광명경실련 및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광명시민을 대리하여, 전 광명시장 등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책임자들을 상대로 낭비예산 약 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
	7.26~8.3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한국 정부 심의 회의 NGO 대표단 참석– NGO의 반박보고서 제출
	8월	전은미 간사 근무시작
	9.28	필리핀 가톨릭추기경 Gaudencio B. Cardinal Rosales 로부터 감사패 수상
	10.23~11.22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12.10(~현재)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연대활동

연도	날짜	내용
2007	12.13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12.26	비닐하우스촌 수정마을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 승소
	12월(~현재)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NGO 보고서 공동 제출 및 한국인권 상황 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 공동 제출
2008	1.14	법무법인 충정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중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법무법인 충정에 연계해 로펌과 공익단체 간 직접적인 법률지원협약 체결 중개
	2.14~2.16	제 1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3.	차혜령 변호사 근무 시작
	3.25	법조협회 제2회사회봉사단체 우수단체 선정
	4.11(~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관련 점검 및 대응 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활동)
	5.14(~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업
	5.16	공익법 활성화를 위한 로펌 프로보노 담당변호사 간담회 개최
	5.17	국제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공동 주최
	6.2	법무부의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퇴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공동활동)
	7.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서 작업
	7.15	군대내 스토킹피해 여군장교 항명죄 항소심변론에서 무죄판결 선고 (11.27 대법원 무죄확정판결)
	8.	김윤경 펠로우 근무시작 (~2009.6)
	9.3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10.15	흑석동재개발구역세입자주거이전비청구소송일부승소 (주거기본권확보를위한동작공동대책위원회공동활동)
	10.21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다국적기업 국제 인권기준 국내 적용을 위한 워크숍' 발제
	11.7	노숙인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09	1.8	버마 소수민족 여성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
	1.20(~현재)	용산 철거민참사 관련 활동
	1.22	HIV양성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승소 대법원 확정
	2.19~2.21	예비로스쿨생, 예비사업연수원생 대상 제2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4.2	이주 아동 ·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활동 시작
	5.2	위법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승소
	5.25	공감 5주년 기념 세미나 '공익법 운동의 성과와 도전' 및 후원행사 '공감 다섯살, 참 고맙습니다' 개최

연도	날짜	내용
2009	6.25	안주영 간사 근무 시작
	7.7	재생산권 침해 베트남 여성의 민사소송 승소
	9.23	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주민소송 사용설명서' 발간
	9.24	주택재개발 · 세입자 주거이전비 소송 승소
	10.9	시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센터와 법률지원 협약
	10.13~14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UN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기획 및 진행
	12.13	외국인 상점 출입국단속 국가배상 사건 승소
	12.14	농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승소
	12.17	「집회 · 시위의 자유와 법정책의 문제점」 토론회 공동주최
2010	1.28~2.6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
	2.4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취소소송 제기
	2.22~24	제3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3.2	11기 공감 정시인턴 18인 선발
	3.9	신윤진 펠로우 근무 시작 (~2010.6)
	4.19	박영아 변호사 근무 시작
	6.1	윤지영 변호사 근무 시작
	6.10	군형법 92조 위헌제청 공개변론
	7.7	김정혜 펠로우 근무 시작
	8.31	제12기 정기인턴 23인 선발
	9.4	일가재단 '청년일가상' 수상
	9.9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승소
	9.10	지적장애 고려하지 않은 수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 위법수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승소
	10.1~3	일본변호사협회 주최 일한 법제연구회 참가
	10.14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
	10.21	장애인 성폭력사건 쟁점 토론회 공동주최
	11.2	버마 민주화 활동가 8인 난민신청처분취소 승소
	11.26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 강제전출 사건 제정신청 결정
	11.30	인신매매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간담회
	12.2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12.30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감사패 수상

공감의 살림살이

수입

개인기부	349,136,605
기업 및 단체	18,837,966
상금	9,560,000
프로젝트	10,341,314
로펌	117,280,000
합계	**505,155,885**

지출

인건비	308,569,949
사업비	116,424,080
운영비	87,237,118
합계	**512,231,147**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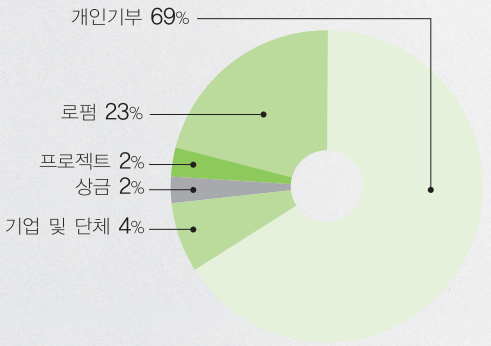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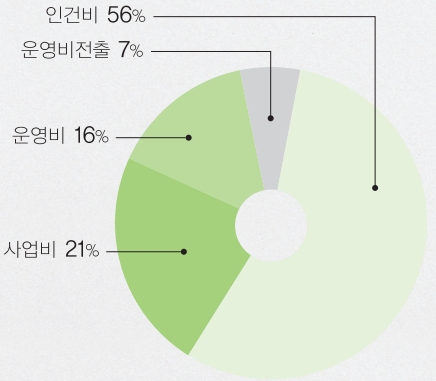

- 인건비 : 공감 구성원들의 1년간 급여, 상여의 총 합
- 사업비 : 공감의 1년간 소송, 연구조사, 인턴 및 기부자 지원업무 비용의 총 합
- 운영비 : 공감 사무실 운영 및 구성원 복지 지원 관련비용의 총 합
- 운영비 전출 : 기금의 운용 및 실사 등 지원 관련 사업을 위한 비용(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전출로 지출, 기부금 중 대한 운영비 전출비율개인 8%, 기업 10%임)

사업비

인턴지원업무	7,285,020
연대단체분담금	750,000
법률교육교통비	620,160
소송실비	8,240,640
인권법캠프	12,156,800
법률연구조사	72,603,070
기부자지원업무	8,254,600
홍보	6,513,790
계	116,424,080

운영비

복리후생비	32,837,057
사무실 유지 관리비	30,155,760
외부 지급 수수료	10,360,000
기기 유지 관리비	4,462,400
교육훈련비	4,055,651
도서인쇄비	3,452,000
회의비	1,161,750
우편발송비	752,500
계	87,237,118

2010 기부자 인터뷰

"공감 변호사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뜻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취감보다는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한 두 사람의 힘으로 감당 할 수 없는 일을 맡고 있으니까요. 공감이 하는 일에 '공감' 하여 기부를 시작했지만, 작은 금액이라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기부자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 혹 특정한 정치색을 가진 것으로 오해되어 기부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윤진수 기부자님

"제 생각에, 기부에는 참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인지하지 못한 채 타인에게 해를 입히며 죄를 지어버린 자신에 대한 '위로' 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기부는 상처 받은 이웃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 입니다. 서로들 경쟁해 이기려고만 하는 사회인데, 공감 구성원들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꼭 '성직자' 같아요. 공감이라는 '고해실' 에, 부끄럽지만, 작은 기부로나마 '고해성사' 합니다."

정정국 기부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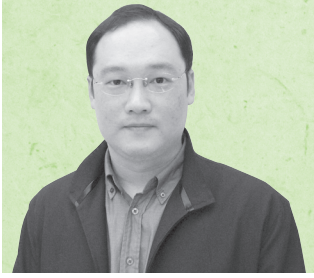

제 생각에, 어떤 일에 가장 '현실적' 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은 '법' 입니다. 그런데 그 '법' 으로써 공익을 위한 일을 한다니, 후원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살아가면서, 다들 나름의 '준칙' 들을 만들잖아요? 저에게는 기부가 그런 의미에요. '나 혼자 잘나서 소득을 올린 게 아닌 만큼, 공동체 사회와 일정 부분 나눠야한다.' 는 '의무' 를 느꼈습니다. 저 또한 '관심을 갖고 고민해온'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기부로나마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지요."

김동율 기부자님

기부자님을 만나러 가는 길, 공감은 설레는 마음에 약간의 긴장을 더합니다.
오고가는 이야기 속에 긴장은 눈 녹듯 사라지고, 설레는 마음은 어느새 기대로 바뀝니다.
2010년 한 해, 기부자 인터뷰 속에 담아낸 이야기들이, 공감은 참 고맙습니다.

"공감의 활동을 통해 세상이 조금씩 변하듯, 저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은 '나누는 이'와 '누리는 이'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작지만 위대한 실천'이지요. '내가 손에 쥔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김홍율 기부자님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베푸는 게 아니죠. 기부는 '자기가 임의로 책정한 조세'입니다. 소득이 창출된 것은, 물론 제가 하는 일에 의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직간접적인 네트워크에 의한 '다른 사람들의 기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 말고 사회가 나에게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조세율(얼마를 기부할 것인가?)이나 사용처(어디에 기부할 것인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정할 수 있으니 참 좋지요."

고은아 기부자님

"법은 사람을 위해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요. 그 '상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감 구성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기부는 배려가 아니라, 그 마음을 실천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하는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한 데 모아진다면 어떤 '영향력' 같은 것도 좀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불편함'도 직시할 때, 내가 갖고 누리는 것에 감사할 수 있죠. 좋은 것만 추구하면 그 만족감도 이내 사라지잖아요?"

전남대학교 2009동계 세계교육기행 최우수 봉사팀과 조복희 교수님

2010 기부자와 공감의 알콩달콩 이야기

1,200명이 넘는 정기 기부자님들이 공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 기부자님,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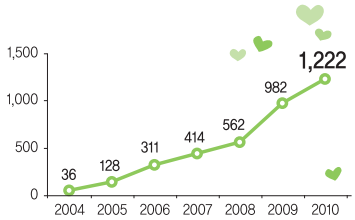

2010년 초. 공감은 1,200명의 기부자님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말. 그 생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감에는 1,222명의 기부자님이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계십니다. 신문, 방송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또 공감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공감을 기부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아 인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마음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눈이 부신 컴퓨터 10대

2010년 11월 25일. 공감에 '반짝반짝 눈이 부신' 컴퓨터 10대가 그 모습도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울산에 계신 한 기부자께서 공감에 '꼭 필요한' 컴퓨터를 보내주셨거든요!

넓은 화면은 문서를 두 개 띄워놓고 작업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가공할만한 스피드는 그동안 노쇠한 컴퓨터로 고생하던 구성원과 인턴들의 작업 속도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보내주신 컴퓨터, 소중히 아껴 사용하겠습니다. ^^

기부자 행사 - 어린이, 공감을 만나다

공감은 기부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공익변호사 삼촌, 이모를 만나요'를 2010년 12월 11일, 공감 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공감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들에게 공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삼촌'과 '이모'를 자처한 염형국,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한 8명의 어린이들은 공감 사무실에서 인권놀이와 이야기를 통해 인권과 공감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시도였기에 쉽지 않은 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어린이, 청소년들과 만나는 시간을 좀 더 자주 만들어보려 합니다. 앞으로 공감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만남. 기대해주세요. ^^

고마운 기부자의 마음 - 기부자의 선물

공감에는 기부자님의 마음이 간간히 전해집니다. 복숭아 철이 되면 사무실 식구들과 나눠먹으라며 복숭아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고, 손수 농사지으신 귤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방송을 보고 힘내라고 간식거리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멀리서 커피와 차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화로, 메일로 다 전하지 못한 감사한 마음이 언제나 공감 사무실에는 따뜻한 온기로 남아있습니다.

세 살 아들의 생일과 공감

12월 말, 아들의 세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기부금을 보내시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세살배기 우리 아들이 훗날에 '공감' 구성원들처럼 사회정의를 위해 뜻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눔에 동참합니다"고 남겨주신 글 속에 가득한 응원과 격려의 소리에 공감은 감동했습니다. 기부자님 아들의 세 번째 생일을 공감이 함께 축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꿈을 갖고, 공감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공감의 시작, 그 처음 모습을 잃지 않는 공감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은

내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한 사람의 나눔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마련되는 '공익변호사기금' 은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변호사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 확장과 적극적 사회변화를 위한 공익변호사들의 굳은 결심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 을 기반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기금' 은 비영리, 전업으로 공익법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홈페이지 | www.kpil.org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메 일 | gonggam@gmail.com
계좌번호 | 하나은행 162-910001-07637 (예금주 : 아름다운재단)

⊙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지정 대상단체로 아름다운재단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1월 초에 일괄 우편 발송해드리며, 원하시면 별도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 공익변호사기금 기부자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사업보고서와 자료집 등의 출판물과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공감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로 공감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2010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함께하신 분들입니다.

감성옥 강건우 강검윤 강경두 강기목 강기탁 강률 강대선 강문혁 강민지 강범구 강부환 강성원 강세라 강세희 강수진 강영규 강영훈 강윤이 강은실 강재상 강지영 강지현 강지현 강진영 강태성 강태영 강현정 강현택 강효리 고경단 고민정 고영래 고원형 고은경 고은아 고정대 고창원 고태헌 고현웅 고훈진 공두현 곽경주 곽노현 곽명진 곽명진 곽우섭 곽형주 관예경 구길모 구나영 구민경 구윤호 구인호 권기현 권명숙 권미애 권병남 권병수 권보미 권선의 권순엽 권영국 권영학 권오근 권오상 권오직 권용선 권용숙 권이선 권익환 권일 권정순 권준율 권택곤 권혜진 권회 기지서 길용수 김경모 김경섭 김경연 김경열 김경완 김경원 김경태 김계순 김광민 김광석 김교신 김권희 김균기 김기온 김기태 김난연 김남식 김남일 김남진 김남훈 김대일 김대훈 김도균 김도원 김도진 김동건 김동관 김동선 김동욱 김동율 김동현 김동현 김동훈 김동훈 김리사 김린 김명내 김명수 김명숙 김명희 김문종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선 김미선 김미연 김미영 김미윤 김미정 김미진 김민경 김민경 김민관 김민석 김범식 김범진 김병구 김병극 김병욱 김병주 김병필 김보경 김보영 김복기 김봉진 김사강 김상기 김상미 김상윤 김상은 김상준 김상헌 김석현 김석현 김선실 김선영 김성길 김성민 김성재 김성헌 김성혜 김성환 김성훈 김성훈 김성훈 김성희 김세명 김세연 김소영 김송이 김수경 김수민 김수열 김수정 김수지 김수홍 김숙경 김숙희 김승미 김승현 김시내 김아름 김연수 김연수 김연숙 김연주 김연주 김영란 김영례 김영모 김영민 김영민 김영수 김영옥 김영옥 김영은 김영익 김영주 김영철 김영태 김영훈 김예영 김예원 김용비 김웅재 김원영 김원천 김월향 김유라 김유련 김유민 김유승 김유진 김윤경 김윤선 김윤선 김윤영 김윤한 김윤희 김은숙 김은숙 김은아 김은희 김인석 김인숙 김인숙 김인택 김일훈 김재욱 김재원 김재원 김재훈 김정민 김정배 김정선 김정순(오경원)김정아 김정예 김정익 김정일 김정주 김정진 김정화 김정환 김정희 김조헌 김종숙 김종식 김종욱 김종웅 김종원 김종철 김종하 김종현 김좌진 김주미 김주옥 김주인 김주혁 김준현 김준호 김지강 김지양 김지우 김지원 김지향 김지현 김지형 김지혜 김지훈 김진 김진수 김진영 김진영 김진옥 김진우 김진욱 김찬억 김창완 김창환 김창환 김채환 김철 김철규 김철민 김치윤 김태경 김태준 김태현 김태환 김학훈 김한석 김해성 김혁 김현 김현대 김현미 김현수 김현아 김현영 김현영 김현우 김현임 김현정 김현주 김현준 김형동 김형로 김혜경 김혜승 김혜진 김홍민 김환철 김효권 김효진 김희원 김희정 나승철 나윤호 나진균 나현채 남경호 남민들레 남세영 남진숙 남현 남화진 노미진 노영주 노우정 노윤선 노현웅 노환철 담도경 도원석 류민희 류선호 류신환 류철민 류하나 류현진 류혜정 마상미 마석우 마은정 맹남주 맹주한 명재성 명종진 명훈주 문경민 문경순 문경혜 문미란 문승권 문유미 문혜영 민경휘 민동섭 민선영 민세영 민형기 박가현 박경웅 박경철 박광선 박근 박금주 박기민 박기출 박노민 박노엘 박다인 박대협 박도준 박동진 박래형 박명희 박민하(김희진) 박병엽 박상배 박상석박서진 박선옥 박성구 박성례 박성준 박세웅 박세희 박소연 박소연 박소영 박소영 박소영 박수열 박숙경 박숙란 박순덕 박순영 박순주 박신애 박신애 박신영 박아롱 박연정 박영도 박영란 박영록 박영배 박영선 박영재 박용대 박용식 박우진 박원종 박윤식 박은경 박은미 박은영 박은영 박은지 박은진 박은희 박을미 박재성 박재형 박정교 박정길 박정렬 박정명 박정선 박종욱 박종혁 박주민 박주연 박주영 박준석 박준석 박지선 박지은 박지혜 박지호 박진동 박진석 박진호 박찬헌 박창서 박철환 박춘희 박태원 박평아 박향미 박현규 박현서 박현수 박현숙 박현우 박형배 박형욱 박혜선 박혜원 박화숙 박화정 박휘영 박희문 박희중 반미영 방경희 방서은 방선영 방주현 배삼희 배상현 배선경 배영근 배의철 백경미 백대진 백명주 백선익 백수진 백수현 백승민 백신옥 백용해 백우철 백인옥 백종근 백지예 변지숙 서경희 서기준 서범옥 서상범 서새롬 서선영 서영란 서은석 서정희 서지은 서진환 서창효 서현수 서효민 서희원 석광배 석근배 석현수 선상준 선정호 선혜숙 설창일 성갑선 성계숙 성원재 성유학 성은지 성정모 성주영 성창근 성창익 성혜진 소민호 소병임 손동인 손병산 손병옥 손봉기 손학렬 송강현 송경화 송계동 송대진 송미나 송민화 송방주 송상교 송승욱 송아람 송영하 송윤정 송인숙 송인호 송주연 송준현 송지현 송충렬 송치영 송태협 신가영 신민경 신용원 신원기 신윤주 신윤진 신은선 신은숙 신정희 신종균 신진화 신창용 신창헌 신혁재 신현길 신혜성 신훈민 심제원 심해용 심현우 심혜섭 안명주 안병국 안상일 안선주 안소연 안영춘 안은지 안이수 안인걸 안재일 안재한 안주영 안한진 양동욱 양선미 양인숙 양정윤 양정화 양지원 양천수 양필승 양현모 양현영 양홍석 양희준 엄영숙 여광수 여지은 여하연 연수진 연재헌 염경용 염규상 염신연 염신희 오병두 오상조 오성택 오수빈 오승민 오윤식 오은정 오응철 오재림 오재창 오지은 오진숙 오현석 오현종 오형동 오형석 오혜순 오희영 왕정희 왕호습 용경미 용성진 우상아 우은주 원경훈 원민경 원주영 원주호 원태연 원희선 위은진 유금녀 유록수 유수정 유승욱 유욱 유유연 유재철 유정인 유정혜 유정화 유제성 유주영 유지선 유진범 유진희 유혜인 유혜정 육종성 윤경 윤공순 윤광훈 윤규상 윤기상 윤민화 윤상균 윤상호 윤성식 윤성운 윤성훈 윤세민 윤수진 윤승기 윤영도 윤영환 윤용구 윤재훈 윤정숙 윤정원 윤정향 윤주현 윤준석 윤지은 윤지효 윤진수 윤현정 윤호석 윤호성 윤홍원 윤홍중 윤화영 은탁 은현호 이강우 이강원 이경은 이경은 이경철 이경호 이계수 이교혜 이규봉 이금화 이기봉 이기선 이길란 이나래 이나현 이난영 이다영 이대로 이대성 이동선 이동준 이동희 이명미 이명신 이미연 이민우 이민하 이범주 이병래 이병록 이병민 이보람 이보향 이복자 이본영 이봉석 이봉재 이상국 이상길 이상돈 이상률 이상미 이상석 이상재 이상중 이상필 이상훈 이상희 이석재 이선 이선기 이선영 이선임 이성우 이성진 이성희 이세라 이세리 이세인 이소아 이소의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수현 이수형 이수희 이숙희 이승윤 이승한 이승한 이언주 이연덕 이연진 이영주 이영창 이영호 이우진 이우형 이원풍 이유경 이유경 이유정 이유진 이윤정 이은숙 이은영 이은옥 이은주 이은지 이은희 이의석 이인경 이인석 이인호 이일 이일권 이자현 이장우 이재민 이재숙 이재승 이재식 이재양 이재엽 이재옥 이재용 이재정 이재한 이재형 이재형 이재호 이재훈 이정란 이정민 이정섭 이정애 이정인 이정진 이정화 이정희 이종미 이종숙 (김일영) 이종식 이종오 이종은 이주창 이주현 이준범 이준석 이중원 이지민 이지연 이지윤 이지은 이지인 이지형 이지혜 이진영 이진우 이진우 이진주 이찬진 이찬호 이창범 이철규 이종희 이치선 이탄희 이태상 이태영 이태호 이하윤 이학준 이한본 이한석 이한주 이행규 이현정 이현종 이현주 이형근 이형수 이혜민 이혜온 이혜욱 이혜진 이호 이호림 이호중 이호철 이홍관 이홍기 이홍철 이환우 이황희 이효건 이효경 이훈우 이희만 이희만 이희봉 이희숙 이희숙 이희순 이희승 임기용 임남규 임대원 임동선 임동은 임미숙 임선영 임소정 임승빈 임용 임원범 임정덕 임종춘 임지원 임지은 임진 임진홍 임창수 임창현 임채민 임채복 임춘화 임통일 임혜연 장가진 장경욱 장남기 장달리 장명숙 장미정 장미희 장성숙 장성윤 장성훈 장세명 장세연 장소연 장숙정 장승희 장영석 장용국 장유식 장은영 장은종 장인수 장준규 장철익 장품 장현지 장혜선 장혜영 장효정 장희진 전경태 전명숙 전민식 전상배 전상윤 전선희 전성아 전성우 전아람 전연미 전용범 전일호 전정현 전주열 전지성 전지은 전진홍 전태언 전현실 정경수 정경애 정계선 정고은 정관주 정규빈 정급영 정낙식 정남숙 정남순 정남운 정다은 정다훈 정동현 정래익 정만준 정명희 정미화 정빛 정상권 정서희 정석원 정선홍 정성윤 정소연 정수정 정수현 정애나 정연욱 정연주 정연희 정영선 정영선 정영혜 정우성 정원경 정원일 정윤아 정은경 정은아 정은영 정은주 정은화 정인섭 정인영 정인혜 정일용 정재우 정재욱 정재훈 정정국 정정태 정정환 정주현 정준영 정지선 정지웅 정진규 정창권 정태훈 정해진 정현숙 정현철 정혜선 정혜원 정혜진 조강수 조대연 조라정 조무제 조문성 조민혜 조범석 조병규 조병준 조봉균 조상균 조서연 조선영 조성숙 조수민 조시현 조영언 조영옥 조용기 조용하 조원석 조은혜 조이여울 조인섭 조인숙 조정은 조정익 조정현 조주영 조진 조찬연 조태미 조태연 조현복 조현빈 조현용 조현주 조현지 조혜련 조혜인 조혜정 조효민 주두수 주상진 주선하 주익철 지박 지현희 진민정 진영호 진형혜 차강진 차승주 차영록 차영진 차용선 차정숙 차지훈 차혜령 차호동 채경옥 채금희 채만기 채성희 채희상 채희선 채희정 천유진 천정훈 최갑숙 최강욱 최건섭 최경락 최광석 최규선 최근우 최기상 최달용 최명숙 최문석 최미림 최미영 최변기 최병선 최서연 최서윤 최석균 최성규 최성보 최세현 최수희 최승진 최영근 최영동 최영륜 최영재 최영희 최용범(페이퍼로드) 최용직 최용혁 최우진 최웅영 최유 최유신 최윤나 최윤석 최윤수 최의실 최인선 최장호 최재영 최재욱 최재홍 최정규 최정윤 최정은 최정은 최정환 최종선 최지영 최지은 최지혜 최진아 최한성 최현순 최현오 최현준 최효진 최희정 최희태 추재식 추혜윤 피세진 하상혁 하성우 하승수 하승연 하정민 한경수 한계영 한대웅 한보경 한상률 한성일 한승미 한승수 한승주 한승진 한아름 한연규 한영미 한재호 한정욱 한지영 한창남 한창훈 한태희 한화숙 함영선 함은혜 허누리 허용하 허인회 허정집 허혜경 현우영 홍두의 홍민식 홍성백 홍성진 홍세화 홍소현 홍수연 홍수희 홍아현 홍영재 홍영진 홍윤선 홍윤철 홍은기 홍종희 홍주환 홍지은 홍희경 황가혜 황경모 황규인 황규환 황다희 황성민 황성아 황성현 황순영 황영명 황영미 황용기 황의중 황인이 황인탁 황재호 황정임 황지영 황지현 황진희 황해광 황현정 황혜진 황호연 石田武臣

(사)인하우스카운슬/(주)센티널테크놀로지 / 김앤장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다온 / 법무법인 원 / 법무법인 율촌 / 법무법인 청신 / 법무법인 충정 /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한누리 / 법무법인 지평지성 / 보누스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 사법연수원 41기3반 / 에르메스코리아(유)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 전농성당 레지오 마리애 정원섬유 / ㈜사이로직 / 주식회사 유니온티엔씨 / 주식회사 미래스타 / THE TOYOTA FOUNDATION / UNHCR

행복은 혼자 먹는 콩다방 커피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콩 반쪽에서 온다는 사실!!

염형국

2010년 한해는 '나이 듦'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느꼈습니다.
더불어 8년이 되어가는 공감의 나이 듦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물리적인 나이나 햇수와 무관하게 건강하게, 젊게 살아야 할 텐데 말이지요,
저도, 공감도! 공감하는 '감응력'이 바로 젊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슴 파르르 떠는, 코 시큰해지는, 눈시울 붉어지는 2011년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라미

정정훈

시인 김언은 "내 말은 뼈를 부러뜨리고 나온다."고 썼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황필규

여전히 법은 어렵고 멀리 있습니다.
침묵하던 법이 사회적 약자가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이를 막기 위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법치(法痴)국가, 그리고 공정(空正)사회.
인권과 공감은 결국 완성될 수 없는 것이기에 끝까지 가려합니다.
항상 곁에 있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간직한 채.

장서연

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기쁨으로 큰 슬픔이 위로 받을 수 있다는
신영복 교수님의 글을 좋아한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작은 기쁨,
작은 행복을 위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전은미

나와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좋은 것을 꿈꾸고 희망을 갖게 하는 공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차혜령

2010년 만난 인연들을 기억하며, 흔들리듯 나아간다.

"상대에 대한 존경과 영성이 담긴 대화, 한없는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대화야말로
차이의 존엄함이 다스리는 세상의 도덕적 형식이다."
– 조너던 색스, 「차이의 존중」 중에서

안주영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좋다.
한편으로는 참 행복하고,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1년이었다.

박영아

"불의와 모순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에
정의와 상식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바로 당신은 공감 가족입니다"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10 연간보고서**

발행일 2011년 4월
발행처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58-1번지 북촌창우극장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디자인 동방기획(02-2277-0365)